第304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2011年12月29日(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국회사무총장(윤원중) 임명승인안
- 2.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7. 기후변화대응 · 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8.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해양경비법안
-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5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 5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 55.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56.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 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 70.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 74.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7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7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
- 7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 8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
- 8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9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9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 10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3.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8.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빛공해방지법안

- 1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1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자녀돌봄지원법안
- 13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3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 1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파견연장 동의안
- 140.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141.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
- 142.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 143.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대안)
- 14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 145.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 요구안
- 146.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4건)
- 147.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附議 王案件

1.	국회사무총상(윤원숭) 임명승인안(의상 제의)9
О	국회사무총장(윤원중) 인사10
2.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10
3.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10
4.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10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10
6.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
8.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10
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0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박희태·정의화·최구식·배은희·신성범·
	안홍준 • 변웅전 • 김을동 • 여상규 • 김태호 • 조진형 • 황진하 • 강길부 • 송영선 • 김재경 •
	송광호·이경재·고흥길·주호영·안상수·이한성·이학재 의원 발의)11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이경재·이한성·공성진·이명수·

	백성운·송광호·장광근·정진섭·장윤석·김광림 의원 발의)11
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11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11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
	김영환·우윤근·이춘석·박주선·김창수·김부겸 의원 발의) ·············11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11
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1
1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1
18.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1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14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14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14
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차명진ㆍ이명규ㆍ이화수ㆍ정해걸ㆍ
	유일호·성윤환·권경석·김성조·임동규·박대해·김태원·조전혁·안효대·김용태·박순자·
	서상기・박보환・원희목・최병국・손숙미・이종혁・박준선・홍일표・김장수・나성린・이혜훈・
	전여옥·이은재·이정선·황영철·백재현·백원우·박기춘·강기정·최규성 의원 발의) ···· 14
2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박민식·황영철·김세연·
	정갑윤・윤석용・박보환・조전혁・서상기・신성범 의원 발의)15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5
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15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ㆍ윤영ㆍ강창일ㆍ이한성ㆍ신영수ㆍ
	권영세·고승덕·허천·김소남·이인기 의원 발의) ·······15
27.	해양경비법안(정부 제출)15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8
29.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18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18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 유정현 · 이명수 · 이상권 · 주성영 ·
00	주광덕·정해걸·안홍준·박민식·정갑윤 의원 발의)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00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18
3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8
35. 36.	임되는 다음 한 다음 한 학생 전문 집을 들는 개성집을 한 대한 대학 전에 한 대학 기계 및 자를 등에 된단 집을 들는 개성집을 한 대표발의)(박은수·박선영·최철국·최영희·
<i>3</i> 0.	우윤근·김춘진·김재윤·전혜숙·이인기·이한성·박영선·권성동·송영길 의원 발의) ···· 18
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유정현·이명수·이상권·주성영·
51.	주광덕·정해걸·안홍준·박민식·정갑윤 의원 발의) ···································
3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4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최철국·김성곤·박영선·박우순·
10.	이춘석ㆍ주승용ㆍ전현희ㆍ김상희ㆍ박은수ㆍ박준선 의원 발의)
4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18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김성태·

	남경필·박준선·신성범·원희룡·이낙연·이진복·이한성·장윤석·전현희 의원 발의) ····	18
4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	•
	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18
4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8
4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3
4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47.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4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49.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5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51.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52.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김춘진·손범규·김태원	
	이한성・안상수・유기준・오제세・이성헌・현경병・정하균・김성수・김정권・우제창・신지호	
	전여옥ㆍ이경재ㆍ이두아ㆍ김동성ㆍ이정선ㆍ정몽준ㆍ장윤석ㆍ김영선ㆍ홍일표 의원 발의) … 2	23
5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3
5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부 제출)	23
56.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3
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2	23
5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7
6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김우남 · 유성엽 · 김성태 · 정병국 · 정해걸 · 김종률 · 이화수 · 황진하 · 이시종 · 우제창 · 박보환	
	임영호·홍일표·강성천 의원 발의) ······	27
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7
6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7
6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7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7
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7
66.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9
6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9
70.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 의원 대표발의)(서종표・김장수・황진하・김성곤	•
	신학용·심대평·박기춘·김학송·안규백·송영선 의원 발의)	31
7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7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1
74.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안상수·김충환·조원진·전여옥·김효재·신영수·이계진·이해봉·유기준 의원 발의) ···· (31
7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유선호·주승용	•
	조정식·최재성·장세환·양승조·문학진·박은수·전현희 의원 발의)	31
7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7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8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34
8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8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조윤선·유기준·이한성·정희수·임해규·
	장윤석 · 원혜영 · 조진형 · 전재희 · 강승규 · 신성범 · 김성수 · 성윤환 · 김성동 · 김태호 ·
	정태근・원희목・박준선・조문환・나경원・김을동・최구식・진성호・이철우・차명진・
	김효재·허천·김영선·김정권·김금래·권성동 의원 발의) ···································
8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34
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34
85.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35
8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35
8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강기정ㆍ
	김영록·양승조·유선호·이춘석·전혜숙·조영택·조정식·최문순 의원 발의)
8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35
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혜성·이한성·
	유성엽·최경희·이인기·강승규·김성태·김효재·공성진·유승민 의원 발의)35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장 제출)35
9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 의원 대표발의)(홍사덕·김무성·김옥이·김을동·
	김효재·나성린·박종근·서상기·성윤환·송훈석·안형환·유승민·윤석용·이명규·이인기·
	이해봉·정의화·조원진·한선교 의원 발의)
9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93.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성윤환·윤영·
	김영진 · 김우남 · 김학용 · 유성엽 · 김성곤 · 유선호 · 전현희 · 송훈석 · 강봉균 · 신건 · 김영록 ·
	권선택 의원 발의)
9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재균·정범구·김우남·최규성·조영택·문학진·김성곤·백원우·전현희·
	김영록 의원 발의)
9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9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9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효석·이찬열·강기갑·
	김춘진·이용희·조경태·조정식·김동철·최인기·강석호 의원 발의)
9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안홍준·박준선·
	이사철ㆍ정갑윤ㆍ성윤환ㆍ강길부ㆍ조진래ㆍ정해걸ㆍ김성수 의원 발의)
9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42
10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안홍준·박준선·김정훈·
100.	이사철·정갑윤·성윤환·강길부·조진래·정해걸·김성수 의원 발의)
10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0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0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107.	제출)
10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43
106.	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00.	- 0 1 - 1 - 0 - 1 - 1 - 1 - 1 - 1

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43
10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43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3.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118.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1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12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1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122.	빛공해방지법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강성천・강창일・권영세・김세연・김춘	진 •
	김효재・박대해・박종희・박준선・서상기・송민순・안규백・여상규・유기준・이성학	헌 •
	이용경・이인기・이한성・임해규・정두언・정의화・조문환・조승수・조전혁・최재성・허	원제
	의원 발의)	48
1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김금	래 •
	김세연・김학송・김호연・손범규・송영선・윤석용・이화수・정해걸・조원진 의원 발의)…	48
1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48
1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	
	이범관·이범래·이성헌·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발의)	
1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8
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	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	
	이성헌ㆍ이화수ㆍ정갑윤ㆍ정진섭ㆍ정태근ㆍ최구식ㆍ허원제ㆍ황영철 의원 발의)	
12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헌 · 이화수 · 정갑	
	정진섭ㆍ정태근ㆍ최구식ㆍ허원제ㆍ황영철 의원 발의)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이정	
	유정현・박준선・김옥이・김용구・정미경・김소남・손범규・신영수 의원 발의)	
131.	자녀돌봄지원법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강성천・고승덕・김소남・박준선・송영	
	유정현·원희목·이인기·정미경 의원 발의)	
13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3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5 .

13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학송・윤석용・ 김소남 · 유승민 · 이진복 · 김장수 · 손범규 · 김무성 · 한기호 · 김성회 · 이인기 · 김옥이 · 김동성 · 원유철 · 황진하 · 정하균 · 정수성 · 노철레 · 장윤석 · 성윤환 · 정해걸 · 강석호 · 1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장 제출) -----53

139. 국군부대의「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파견연장 동의안54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54 141.

142.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55

143.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55

14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조영택·장병완·문희상·신낙균·강기정·원혜영·강창일·김영진·홍영표·이성남 의원 발의) ·······55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ㆍ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 145.

(10시22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사무총장(윤원중) 임명승인안(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박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 총장(윤원중) 임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임 국회사무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2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승인 대상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아 의원, 정옥임 의원, 김진애 의 원, 김혜성 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 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 하셔서 좌측 명패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 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 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 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 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 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0시26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 다 하셨지요?

(10시4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3표 중 가 201표, 부 8표, 기권 4 표로서 국회사무총장(윤원중) 임명승인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회사무총장(윤원중) 인사

(10시41분)

○**의장 박희태** 그러면 신임 국회사무총장의 인 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중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무총장 윤원중**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사무총장으로 임 명 승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 도록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윤원중 사무총장 축하합니다.

- 2.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 6.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7. 기후변화대응 · 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8.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3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2항 세계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기후변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기후변

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 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 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위 7건에 대해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홍영표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입니다.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7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짧게 하라는 압력이 많아서 아주 짧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둘째,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셋째,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넷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다섯째,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섯째,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그리고일곱 번째,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가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제안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10시46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9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상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상권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상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실장이 사전에 승 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경호구 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구역 지정 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실장이 경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등을 사후 점검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 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편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 처장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호안전대책기구가 여러 기관으로 구성 되고 있으므로 이 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였 고, G20 정상회의 개최 시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경호안전대책기구의 장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 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 당하거나 전문·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 원의 경우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장이 3년 범위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장 추천 시에 추천기준 등이 명확 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자격요건 등을 정하 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수정하 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이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95인 중 찬성 186인, 반대 5인, 기권 4인 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 발의)(박희태·정의화·최구식·배은희· 신성범 · 안홍준 · 변웅전 · 김을동 · 여상규 · 김태호 · 조진형 · 황진하 · 강길부 · 송영선 · 김재경 · 송광호 · 이경재 · 고흥길 · 주호영 · 안상수·이한성·이학재 의원 발의)
-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김기현ㆍ이경재ㆍ이한성ㆍ공성진ㆍ 이명수 · 백성운 · 송광호 · 장광근 · 정진섭 · 장윤석 · 김광림 의원 발의)
- 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 김영환・우윤근・이춘석・박주선・김창수・ 김부겸 의원 발의)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 1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50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해 양과학기술원법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시설특별회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 정 제1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1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18항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 나오 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김기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등 총 9건의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해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독립법인 형태의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겸직 등 협력대상을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출연금 지급 근거를 보완하는 등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현행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하 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인 국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하천시 설의 종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도 지사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이월규정이 있는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교통시설특별회계도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의원 발의안 12건과 정부 제출안 2건 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동차 보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행중지 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업

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단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전여옥 의원, 이한성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버스운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한자의 여객자동차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성범죄자, 살인죄 그리고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20년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동규 의원, 백성운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고보통세 일부를 광역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배정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륜자동차의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절차에 따라서 법률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김기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6인, 반대 7인, 기권 9인 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국토해양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 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은 물론 다 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 이 소요되는 유지 · 보수에 대한 관리 권한을 4대 강 사업에 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귀속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정부는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4대강 사업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준 설에 대한 완공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준 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지 않습 니까?

또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4대강 사업을 시행 하던 시행사가 하면 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필 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4대강의 모습 은 어떻습니까?

댐에 물이 새고 균열이 생겨 붕괴 직전의 모습 을 하고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방 도 무너지고 4대강 유역 다리도 곳곳에서 붕괴되 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것입 니다.

2012년 정부 예산으로 신청한 4대강 사업의 유 지 · 보수 비용은 1997억 원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실시한 '국가하천 유지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을 매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612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4대강 사업

이전 매년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 쓰였던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완공되었다던 강바닥의 모래를 파내는 하도준 설비가 매년 674억, 4대강 시설에 대한 보수ㆍ점 검비가 101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대는 정부는 추가비용이 필요 없다던 지난 해 명을 뒤로 하고 이번에도 유지·보수를 위해 하 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22조 2000억만 들면 된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4000억 원과 유지·보수 비용 6000억 원을 합해서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 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 는 정부 예산을 더 이상 4대강 사업으로 빨려 들 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8조 원에 대한 회수의 출처가 또다시 국민의 혈세가 된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전에도 국민의 혈세를 건설 재 벌에게 나눠 주는 이명박식 토건독재, 부실사업 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대강 사업 관 리의 권한만을 시·도지사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듯 보이지만 4대강 사업이라는 밑 빠진 독에 정 부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채워 넣도록 하는 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9인, 기권 10 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교 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주 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대 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기권 5인으로서 항 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 워장 제출)
-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워장 제출)
- 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차명진ㆍ이명규ㆍ이화수ㆍ정해걸ㆍ 유일호 · 성윤화 · 권경석 · 김성조 · 임동규 ·

박대해 · 김태원 · 조전혁 · 안효대 · 김용태 ·

박순자 · 서상기 · 박보환 · 원희목 · 최병국 ·

손숙미ㆍ이종혁ㆍ박준선ㆍ홍일표ㆍ김장수ㆍ

나성린 · 이혜훈 · 전여옥 · 이은재 · 이정선 · 황영철 · 백재현 · 백원우 · 박기춘 · 강기정 · 최규성 의원 발의)

- 2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박민식·황영철·김세연· 정갑윤 · 윤석용 · 박보환 · 조전혁 · 서상기 · 신성범 의원 발의)
-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장광근·윤영·강창일·이한성·신영수· 권영세 · 고승덕 · 허천 · 김소남 · 이인기 의원 발의)
- **27. 해양경비법안**(정부 제출)

(11시08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9항 주택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금자리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21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법안, 의사일정 제24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해양경비법안, 이상 9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이상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백재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 합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 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 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용섭 의원, 조정식 의원, 최규성 의원, 고흥길 의원, 백성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를 위해 수평증축과 별동증축 및 세대분할을 통 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 인 가구에 대해 주택임차료 보조제도를 도입하 며, 주택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단지의 공 구별 분할 건설 및 공급을 허용하는 것 등입니

다음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진섭 의원, 박기춘 의원,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범 위를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의 비율을 고려해 거주의무기간을 완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 두환 의원, 김낙성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 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판매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 관이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 여 건설공사의 자재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 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 제도를 현행 신청에 의한 평가제에서 의무평가제 로 전환함으로써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를 활성 화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차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 사 외에 세무사도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 진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토지분 할에 관한 특례법안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 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 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 게 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을 일반공유자와 동일하게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시 에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 도록 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상은 의원,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원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무역항과 연안항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각각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화하며,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과 2종 항만배후단지로개편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항만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항내·외를 불문하고 운행하는 예 선은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 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양경비법안은 해양경비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검문검색, 무기 및 장비 사용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국회 입법권 침해소지가 있는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벌칙조항 등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임해규 의원님, 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주 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기 때문 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주 택 공급이라는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 이 분명하기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주도하였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민간건설업자를 시행자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용지가격을 올려서 분 양가격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그린벨트 땅을 민간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넘 긴 이후에 건설 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격을 높 이면서 거주의무기간을 줄여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의 건설 원가를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26% 이상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LH공사의 내부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택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변수가 토지 가격입니다. 건축비는 3.3㎡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어떻습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의 싼 땅을 풀어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예상 분양가는 3억 원에서 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보금자리주택을 시작할 때 최빈층에게는 영구임대, 소득 4분위 이하는 국민임대, 소득 5분 위 이하는 전세임대와 공공분양을 하겠다면서 보 금자리주택의 공급 대상은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라고 큰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간소득 수준의 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으면 12년이 걸려야 됩니다. 지출을 고려하면 60여 년이 걸려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도 서민들에게는 버거운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

자에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특혜로 공급하고 분양 가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본 개정법률안은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지난 9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특혜를 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는 5년인데, 무 주택 서민들에게 처음에 저렴한 주택 마련의 기 회를 제공하는 대신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던 것인데 미분양이 마치 의무거주 때문인 양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진심 어린 의지가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 로 양질의 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후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지나 갔고, 집 없는 서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 들은 현재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 회의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33인, 반대 48인, 기권 21 인으로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8인 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공 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1인, 기권 6인으로서 기 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항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5인, 기권 8인 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십시오.

이철우 의원님, 투표하세요.

윤 의원님, 기다립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선 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경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경비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29.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유정현·이명수·이상권· 주성영·주광덕·정해결·안홍준·박민식· 정갑윤 의원 발의)
-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 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 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3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3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박은수·박선영·최철국·최영희·우윤근·김춘진·김재윤·전혜숙·이인기·이한성·박영선·권성동·송영길의원 발의)
- 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유정현·이명수·이상권· 주성영·주광덕·정해걸·안홍준·박민식· 정갑윤 의원 발의)
- **3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39.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최철국·김성곤·박영선· 박우순·이춘석·주승용·전현희·김상희· 박은수·박준선 의원 발의)
- 4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김성태·남경필·박준선·신성범·원희룡·이낙연·이진복·이한성·장윤석·전현희 의원 발의)
- 4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 **4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11시2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8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36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민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공장 및 광업재단 저 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민 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42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은재 의원님 나오셔서 17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李恩宰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 소속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을 드리면

첫째,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와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을 마련하였고.

둘째,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 죄로 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와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이정현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으로서 검 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등의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 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은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천천히 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검 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국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정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 러분께서 반대표결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게 되어서 매우 급하게 지금 반대토론을 하기 위 해서 나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 지금 제안설명을 보시면 383조2항을 신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항을, 상고이 유를 정한 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하는 것 인데요. 지금 383조 형사소송상 상고이유는 현재 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을 경 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 다."고 해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4호에 보시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어서 현행 형사소송법 383조1항4호에 따르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 3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피고인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383조1항, 현재 383조1호에 보시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위반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고, 많은 형사소송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에 위반되었다고하여 사실인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383조1호의 상고이유를 기초로 하여 선고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법의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파기되는 경우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하여 파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383조2항에는, 기존에 있었던 1호부터 4호까지를 1항으로 변경하여 그대로 둔 채 2항을 신설하여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이유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없는 것으로한다'이것은 기존의 1호, 존재하고 있었던 1호와 4호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4호에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 친 때'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둔 채로 이것의 해석을 2항을 신설해서 '원심판 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경우에는 상고이 유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 자체도, 법률의 1항4호와 2항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형사재판에서 1항1호 증거법칙에 위배됐다는, 형사소송법의 전문증거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법칙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사실인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2항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남편이, 한 치과의사가 부인 그리고 아이를 동시에 살해했다고 해서 기소돼서 사형이 2심까지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에 가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실인정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심과 2심에서 아직까지 형사재판의 실체적 법정 진술과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말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아직도 사실인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이런 규정을 도입해서 사실상 3심에서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크게 부추길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래 법률심이다. 그러니 사실 인정 이제 다루지 않겠다' 잘라 버리자는 것입니다. 재판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에서 형사재판이 구술주의 그리고 직접 피고인이 대면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법률심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개정안까지도 여러 차례 논의됐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앞으로 상고심의 심리 범위는 매우 줄어들게 되고 1심과 2심의 오심을, 특히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1심과 2심의 오심을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의 1심과 2심의 사실심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된 다음에 상고심이

법률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한 다음에, 그다음에 383조1항의 상고이유의 개 정과 더불어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표결 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89인, 반대 74인, 기권 33 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6인, 기권 7인으로서 변 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4인으로서 검 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민 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반대 토론 신청이 있는데 서면 신청을 못 했습니 다.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 이 법안, 민사소송법?

(○이정희 의원 의석에서 — 민사소송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금 기다리십시오. 서면신청 접수해 가지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7항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 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천천히 하세요.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워낙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안 건이 긴급하게 올라왔고 그래서 서면으로도 신청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 다.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의상고 이유를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일 경우에는 대법원의 상고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역시 대법원이 함께 관장하는 것이고 그 상고사건의 범위는 함께 처리되어야 맞습니다. 같은 규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신 것처럼 이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왜 찬성토론 있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를 했는데 지금 누가 다시…… 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80인, 반대 64인, 기권 43 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황진하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민 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기권 4인으로서 채

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감 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으로서 공 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4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47.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5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52.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김춘진·손범규· 김태원 · 이한성 · 안상수 · 유기준 · 오제세 · 이성헌 · 현경병 · 정하균 · 김성수 · 김정권 · 우제창 · 신지호 · 전여옥 · 이경재 · 이두아 · 김동성ㆍ이정선ㆍ정몽준ㆍ장윤석ㆍ김영선ㆍ

홍일표 의원 발의)

- 5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사법위원장 제출)
- 5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부 제출)
- 56.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1시5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지금 이 제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교섭단체 간 합의 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5항은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5항에서 54항 및 56항에서 제58항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46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선박및해상구조물에 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형사 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52항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안, 의사일정 제5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남북 주민 사이의 가 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 56항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57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이 상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현기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밥은 언제 먹나요.)

○法制司法委員長代理 朴俊宣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

신의 박준선 의원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학송 의원, 이혜훈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 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하여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중혼의 취소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고, 부부간 계약 취소권 조항을 삭제하며, 미성년자의 입양·파양에 법원이 필수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친양자의 대상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 등의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난민인정 심사에서 면접과정 녹음·녹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최근 남북 주민 사이에 상속회복청구 및 중혼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산가족 간 신분·재산 관련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월남자의 재혼이 중혼으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고,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특례를 두는 내용으로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가정법원 합의부 전속관할로 수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겼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오늘 워낙 법안이 많아서 12 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현기환 의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이상 13건만 의결하고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민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특정범죄신고 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선 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석 의원님은 뒤에 처리해 주시지요, 찬반.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형 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사 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군 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난 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9인, 기권 4인으로서 출 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 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남 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법 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입니다.

법안 이름도 아주 깁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우 리 농민들이 무슨 법인지조차 잘 기억하기도 어 렵겠습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 법률 때문에 그저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이 대거 범죄자가 될 상황에 몰리게 될까 봐 반대 토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자는 것인데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농식품부, 산림청,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찰권을 주어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종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농민들이 자기 밭에서 씨를 받아 이듬해 농사에 쓰는 자가채종까지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이 사법경찰권까지 동원하여 종자산업 보호를 내세워 강력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국제 품종보호제도인 UPOV가 시행됩니다. 그간 허술했던 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매우 강화되며, 이에 대한 단속도 매우 강해질것입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농민들이 대거범죄자로 전략해 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자가채종을 해 오던 농민들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계속자가채종을 해오던 종자 가운데 어떤 종자들이품종보호 대상으로 법 위반이 되는지, 자가채종을 못 하게 되면 종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등 다 농민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하지만, 종자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농산물값은 생산비 보장도 안 될 정도로 바닥을 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종자산업법, 품종보호권 제도는 종자업자들의 이익은 극도로 보장하면서 농민이 가진 종자에 대한 권리는 제한하고 박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까지 주어 가며 단속에 급급하여 종자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토종 종자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농민들의 자가채종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자라는 것은 계속 땅에 심어지고 환경에 적응해야 좋은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종종자를 예전에 농부들이 해 왔던 방법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내 보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들의 자가채종을 보장하는 국제 흐름

에 맞게 농민들의 자가채종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먼 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수십만 년 동안 자가채종으로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온 만큼 우리 고유의 종자 들에 대한 가치와 종자에 포함된 문화적 가치까 지 인정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 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종자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한국 내에서 국내산 종자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보나 근본적으로 자가채종, 지금까지 전통적으로해 왔던 농민들의 이 보호 육성에 대한 대책이,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권을 주어서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이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토론에 임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 시기 바랍니다.

○**朴俊宣 議員**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 원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은 지금 농수산 식품부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병무청 공무원의 특 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리고 거기에 종자산업법 제145조에 의한 국립종 자원에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단속권한을 부여하 는 법입니다.

지금 강기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채종 그런 종자와 관련된 실체적인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는 이미 종자산업법에 있습니다. 뭐가 죄가 되느냐? 자기가 자기 밭에 씨를해서 하는 것, 이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유통구조에서 신고되고 등록된 종자산업자들, 농민들이 건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이 단순히 조사만 하고 관찰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 자가채종의 어떤 그런 선량한 농가를 단속하고 핍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점 혜량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또 법사위원회에 서 법률 검토를 다 해서 넘긴 법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40인, 반대 13인, 기권 5인 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15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김우남·유성엽·김성태·정병국·정해결· 김종률·이화수·황진하·이시종·우제창· 박보환·임영호·홍일표·강성천 의원 발의)

- 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9항 고엽제후유의 중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무위원장대리 이성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 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호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 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파킨슨씨병 및 허혈성 심장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 고엽제후유증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

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보철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월남 참전유공자들을 위한법정단체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월남 참전유공자들의 상부상조 및 자활능력 배양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기존 고엽제전우회 측과의 단체 간 마찰을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엽제 관련자는 양 단체에 중복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김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시키고 전역 후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김동철 의원, 박상돈 의원, 홍영표 의원,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다단계판매 요건을 완화하여 유사 다단계업체들이 다단계업체에 포함되도록 하였습 니다.

둘째,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판매방식을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하여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금지하고, 전화 권유 판매 수 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며, 방문판매계 약 청약철회권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진래 의원, 김영선 의원, 황영철 의원, 송훈석 의원, 오제세의원, 정옥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

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적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대 한 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민식 의원, 김동철 의원, 신학용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맹거래사 등록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포괄위임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문제점을 바로잡거나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고승덕 의원, 권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 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관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될 경우에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등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고 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참 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제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6.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 6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 재정위원장 제출)

(15시16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6항 협동조합기본 법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조세범 처벌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3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용섭 기획재정위원회 소 속 광주 광산구을 출신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 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은 손학규 의원, 김성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안과 이정희 의원이 소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에 대한 청원을 통합 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유엔 총회에서 2012년을 협동 조합의 해로 선포한 취지에 부응하면서 경제성장

의 새로운 추동력으로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사회통합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 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법인으로 하되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협동조합의 사업은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 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일정금액 한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 지 아니하되, 다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 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 용은 현재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관할 세관장이 관세공무원에게 뇌물 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 여 뇌물 공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용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협동조합기본 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11 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조 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69항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0.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2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0항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 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유기준 존경하는 정 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 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법률안은 올해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합치되도록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ㆍ처분케 하려는 것으로 예산배정 시기를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후로 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를 2012년 3월 1

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 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재 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 의원 대표발의)(서종표·김장수·황진하·김성곤· 신학용 · 심대평 · 박기춘 · 김학송 · 안규백 · 송영선 의원 발의)

(15시2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1항 군인복지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서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서종표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 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군인의 직업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군인 자 녀들이 잦은 전학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운 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학교법인의 설 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서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설립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 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서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74.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안상수 · 김충환 · 조원진 · 전여옥 · 김효재 · 신영수 · 이계진 · 이해봉 · 유기준 의원 발의)
- 7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유선호· 주승용 · 조정식 · 최재성 · 장세환 · 양승조 · 문학진·박은수·전현희 의원 발의)
- **7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 원장 제출)
- 7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7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15시2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

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3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제75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의사일정 제76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대안), 의사일정 제78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안효대 의원님 나오셔서 이 상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안효대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 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세종시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년간 25% 이내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있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은 인감증명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도입하도록 하는 제정안으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일부 신청절차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보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반영하되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

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심사한 결과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반영하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하고.

둘째, 경찰서장 보임직급으로 기존 총경, 경정 외에 경무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 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둘째,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소방 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배치하고 소방공무원의 전 문치료센터에 건강관리·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 그램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배치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취업 알선, 사회적응교육, 창업 지원 등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도선의 영업구역에 내수면과 해수면의 개념을 도입하고.

둘째, 도선사업자가 연륙교 등 건설로 인해 영 업 손실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셋째, 휴지·휴업 중에 영업 외의 목적으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에도 입·출항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독 대상 업무를 법 령에 따른 위탁한 사업 등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 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 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안효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 다.

그러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손범규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세 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본 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6인, 기권 7인으로서 동 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경 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소 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유 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소 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 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원장 제출)
- 8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 발의)(조윤선·유기준·이한성·정희수·임해규· 장윤석·원혜영·조진형·전재희·강승규· 신성범·김성수·성윤환·김성동·김태호· 정태근·원희목·박준선·조문환·나경원· 김을동·최구식·진성호·이철우·차명진· 김효재·허천·김영선·김정권·김금래·권성동 의원 발의)
- 8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0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1항 전 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2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문화재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조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조윤선 존경 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윤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전재희 의원, 정병국 의원,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이를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 였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 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법의 전부개정법률 안은 역시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의 방재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교재산에 대해서 국가 통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재산관리인의 임명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합니다.

다음, 조윤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만화진홍에 관한 법률은 만화진홍위원회의 설립근거를 삭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만화가·만화사업자 등에게 자금과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강승규 의원, 나경원 의원, 김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민법상의 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외소 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조윤선의원 및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통합하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외 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화재로부터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별도로 흡연구역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 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조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콘 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만 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문 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문 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5.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강기정・김영록・양승조・유선호・이춘석・ 전혜숙 · 조영택 · 조정식 · 최문순 의원 발의)
- 8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혜성·이한성· 유성엽 · 최경희 · 이인기 · 강승규 · 김성태 · 김효재·공성진·유승민 의원 발의)
-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 의원 대표발의)(홍사덕·김무성·김옥이·김을동· 김효재・나성린・박종근・서상기・성윤환・

송훈석·안형환·유승민·윤석용·이명규· 이인기·이해봉·정의화·조원진·한선교 의원 발의)

(15시46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5항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7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상일 정 제8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장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장병완 존경 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광주 남구 출신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안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작은 도서관 진흥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 등은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육성시범지구를 선정,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등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 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선영 의원, 이명수 의원, 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정보 취약계층 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안 등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확대한 국립장애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원제 의원, 윤석용 의원, 곽정숙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선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부과였습니다.

셋째,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방위 경고방송 도 재난방송과 같이 한국방송공사를 주관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은 의원, 김을동 의원, 김춘진 의원, 전혜숙 의원, 진성호 의원, 강창일 의원, 장병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방 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전반 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였으며, 정보 보호 사전점검제도와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 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 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협회 가 국가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수수료 수입 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 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장병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작은도서관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도 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93.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성윤환· 윤영·김영진·김우남·김학용·유성엽· 김성곤·유선호·전현희·송훈석·강봉균· 신건·김영록·권선택 의원 발의)
- 9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재균·정범구· 김우남·최규성·조영택·문학진·김성곤· 백원우·전현희·김영록 의원 발의)
- 9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 위원장 제출)
- 9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 위원장 제출)
- 9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효석·이찬열·강기갑· 김춘진·이용희·조경태·조정식·김동철· 최인기·강석호 의원 발의)

(15시5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92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3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7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송훈석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송훈석**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원도 속초·고성· 양양 출신 민주통합당 송훈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의화 부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 록제를 도입하고,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 이 있는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 우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농업적으로 적극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품종 선택 지원, 간척지 생산 농산물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31일 한미 FTA 관련 여야정 합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5개년 평균가격의 85%에서 90% 미만으로완화하고 직불금의 상한액을 농어업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농지 최소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및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토종가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 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 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 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송훈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가 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간 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농림 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 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 농어민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 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 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한미 FTA에 대한 대책. 대안인 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농민들, 본 의원은 분개를 금치 못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 발효요건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을 5년 평균하여 85%에서 90% 미만으 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민간연구소의 연구에서 도 90% 정도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실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단 한 푼도 농민들에게 지급된 바 가 없는 유명무실한 대책이 85%에서 90%, 5% 끌어올린다고 이것이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초래될 우리의 농업과 농 민들의 타격과 한숨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 다.

사실 그동안 한국 농업과 농민들은 수출 제일 주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주의에 언제나 희생제물이 되어 왔습니다.

95년 UR 이후 농어업 분야의 수입이 전면 개 방되면서 우리 농어업인의 생명산업은 그 자체로 몰락의 길을 걸어 왔음에도 그래도 근근이 생명 력을 잃지 않고 유지되어 왔던 것은 바로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해서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의 한미 FTA 체결 내용을 보면 1531개 품목 중에 576개의 품 목이 바로 즉시, 모든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수 입되고 있는 농산물의 55%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UR 협상, WTO 협상 때 철석 같이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하나 이제 그 관세가 이렇게 없어져 버렸는데 한미 FTA로 인해서 최대 농업강국인 미국 이 … 이 관세가 대부분은 10년 내지 15년 만에 나머지 관세도 다 없어집니다.

멕시코의 경우 막대한 보조금으로 무장한 미국 농산물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졌고 멕시코의 주식인 토르티야는 그 원료인 옥수수 가격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

이유는 분명합니다. 카길과 같은 소수의 미국 계 기업들과 이들의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 는 대기업들이 결국 대한민국 시장에도 종자, 사 료, GMO 등, 지금도 석권하고 있습니다마는 앞 으로 농식품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한국 농 업과 식품 업계를 잠식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 다.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축산 농민들의 피 해가 대단히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세계는 이상기후와 곡물 투기로 인해서 식량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이때 그 무엇보다 도 한미 FTA를,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재고해야 될 이런 시점에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 놓고 2004 년도부터 단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런 유 명무실한 대안을 큰 대책인 양 세우고 있는 지점

에 대해서 현장 농민들의 심정과 저희 통합진보 당의 입장을 가지고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드리 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것입 니다마는 이런 행태로 진행되는 데 대한 문제 제 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의 토론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인데 현장 축산 농가들의 뼈아픈 현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저로서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 농가들은 지금 구제역 여파와 한·EU와 한미 FTA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바로도입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몰린 우리 축산 농가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피치 못하게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는 가축 전염병 방역이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명확한 근 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등록제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근거를 일절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농가 방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행 축산법 제53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규모 농가에 한해 '소독시설 의 무화'등 필요한 사항을 등록 요건으로 하여 시 행규칙을 개정하면 충분히 농가가 방역설비를 갖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1996년 12월 26일 선고 96헌가18 결정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즉 축산업에 대한 제한을 두려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수단이 여러개 있을 경우에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기본권 침해가 많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한우농장에 도입 우 및 환축에 대한 격리시설, 농장 입구 고정식 차량격리시설, 방문자 샤워실 등을 운영하는 데 대략 6700만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업 선진화라며 무작정 허가제 도입만을 강요 한다면 현장 농가들은 정말 살길이 막연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한우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70만 원 하던 한우 송아지가 좋은 것은 50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70만 원 하던 것 이 보름 전,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한우 농가들 은 날이 새면 새는 대로 이 축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한 다는 것은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어야 되지 이렇게 축산법 허가제를 내서 축산 농민들을 더 시설을 강화시키고 부담을 주고, 어느 한우 농가들이 지금 이 시설을 융자를 준다 해도 갖춰서 축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축산 허가제는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절규하고 있는 축산 농가, 특히 한우 농가들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농림수산식 품위의 이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축산법 개정안에 따른 찬성 토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축산 농가가 얼마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까?

축산업 허가제는 무질서하고 난립되어 있고 또한 위생조건, 법질서 확립을 하고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업 허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1안, 2안, 3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은 기존 축산업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 수단

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자는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보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 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은 질병 발생 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불편함, 지역경제 손실 등 공공에 해를 끼치는 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현행 축산업 등록제가 사실 상 허가제 수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록제의 위치, 시설, 적정 사육 두수, 교육 등의 기준을 적용, 허가제에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에서 현장 심사를 통한 적합한 농장에 축산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환경, 위생 안 정, 방역을 위해 축산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 며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건 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저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아무런 반대 없이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금 이 허가제 법안을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35인, 반대 18인, 기권 14 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수 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9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안홍준·박준선·이사철·정갑윤·성윤환·강길부·조진래·정해걸·김성수 의원 발의)
- 9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0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안홍준·박준선·김정훈· 이사철·정갑윤·성윤환·강길부·조진래· 정해걸·김성수 의원 발의)
- **10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 식품위원장 제출)
- 1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0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6시24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98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0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3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존경하는 성윤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성윤환** 농수산식품위 원회 성유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자조금

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 의무 자조금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관리위원 회의 설치 운영 등 농수산자조금의 체계적 조성 운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도매시장 운영 방식을 자율화하고 매매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도매시장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공정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의사의 응 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려 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감안해서 시행 시 기를 1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하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 본잠식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서 배당금 출 자전환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등 선거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조합장 선거의 당선무효 사유에 당선인의 직 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하고 조 합장 동시 선거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성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2인 으로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안은 농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2인, 기권 4인으로서 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1인, 기권 5인으로서 축 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0인, 기권 6인으로서 수 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5인 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0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 위원장 제출)
- 10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1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10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6시31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04항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105항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106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님 나오 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장대리 노영민**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입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민순 의 원, 박선영 의원, 김영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 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중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무역 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지원 등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지원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혜성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 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 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 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설치하고 그 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며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상부상조 사업 등에 대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에서 제안설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연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종원 의원, 최연희 의원,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동 개정법률안과 1건의 입법청원을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주식회사 강원랜드가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출연하는 부담금의상한을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둘째 한시법인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10년간 연장하였으며, 셋째 인허가 의제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통보 기간을 30

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 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중소기업진홍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 11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3.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 1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16시39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의료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0항 약사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1항 국민 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112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113항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14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5항 국민연금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6항 노인복지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7항 영유 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신상진 의원님 나 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신상진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 용은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 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 되, 그 시행을 5년 동안 유예하고, 해당 자격 제 한의 적용은 분야별 전체 대학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가 공개된 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 였습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 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강화하 였습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 용은 의약외품의 기재상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오·남용으 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 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긴급방역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 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말까 지로 5년 연장하고,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직장가입자에 대하 여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징

수하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하며,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 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 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 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지법 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 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현행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고—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인은 회계

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수 없도록 하고, 특히 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임원정수를 위 반한 경우 등을 법인설립 허가 취소사유로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 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 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 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 금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 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 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 도록 하고, 소방관계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비상 재해대비시설이 영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적용 하도록 하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보 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 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신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3인 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국 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사회보장기본 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사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2인 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국 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영 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18.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 1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2. **빛공해방지법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박영아·강성천·강창일·권영세·김세연· 김춘진·김효재·박대해·박종희·박준선· 서상기·송민순·안규백·여상규·유기준· 이성헌·이용경·이인기·이한성·임해규· 정두언·정의화·조문환·조승수·조전혁· 최재성·허원제 의원 발의)
- 1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김금래·김세연·김학송·김호연·손범규·송영선·윤석용·이화수·정해결·조원진의원 발의)
- **1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 1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 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 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 이성헌·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 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 1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 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

- 이범래 · 이성헌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 12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헌·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 위원장 제출)
- 1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이정선·유정현·박준선·김옥이·김용구·정미경·김소남·손범규·신영수 의원 발의) (16시53분)
-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18항 환경분쟁조 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9항 대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120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 정 제12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22항 빛공해방지법안, 의사 일정 제12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4항 생물다양 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5 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6 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7항 파견근 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128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9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0 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13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강성천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3건의 법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법률안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분쟁조정의 대상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 해를 포함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재 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평균배출량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성능유지 확인과 검사를 의무화하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도 환경안전보호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화학물질의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취급제한 • 금지물질 지정 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며, 유해 화학물질의 긴급 제조ㆍ수입 중지 제도를 도입하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빛공해방지법안은 제명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으로 변 경하여 이 법의 관리 대상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한정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조명의 소유자 등에게 빛 방사 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조명에 대하 여 5년의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 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점관리 저 수지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저수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의 양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 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안은 정책적 관리 대상인 생태계 교란 생 물을 정의하고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에 서 해양생물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긴급조치의 시행주체를 환경부장관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 관련 법률안입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 원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지원금의 환수 규 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차별시정의 신청기 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지도 및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근거를 신설하였 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시정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즉시 고용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용노 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 로 일원화하고 상용형 파견제도의 근거규정을 삭 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 업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금사용액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 가를 5일의 범위에서 최소 유급 3일을 보장하도 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계 약기간에서 제외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 주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기간을 출국 후 1개월에서 3개 월로 연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재입국 취업 허용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결정주체를 외국 인력정책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강성천 의원님 법안이 많아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배은희 의원님 하시면 확실한 재적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1인, 기권 4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빛공해방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빛 공해방지법안은 노동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 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2인, 기권 1인 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근 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5인, 기권 4인으로서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31. 자녀돌봄지원법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이정선·강성천·고승덕·김소남·박준선· 송영선 · 유정현 · 원희목 · 이인기 · 정미경 의원 발의)
- 13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3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7시10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자녀 돌봄지원법안, 의사일정 제132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 정 제13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134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4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김혜성**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혜성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자녀돌봄지원법 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돌봄지원법안입니다.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안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서비스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정의 규정과 비용지원 근

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박선영 의원, 김재윤 의원 등 14 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 으로서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제공하 는 신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정보에 대 한 공증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 체의 자본금 요건 등록 기준과 공시제도 등을 신 설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영록 의원, 강봉균 의원, 김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하여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김혜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녀돌봄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자녀돌봄지원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의결정족수가 그렇게 많이 초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를 뜨지 않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따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다 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인제 의원님, 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한 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 위원장 제출)

(17시1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3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 성윤환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성유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 원에 대한 헌 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3억 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하향 조정으로 인한 후보 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소속 후보자의 추 천 선거인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간 금지되었던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 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 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로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재외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등에게 재외 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선거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성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3인, 반대2인, 기권 8인 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 원특별위원장 제출)
- 13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학송· 윤석용 · 김소남 · 유승민 · 이진복 · 김장수 · 손범규·김무성· 한기호·김성회·이인기· 김옥이 · 김동성 · 원유철 · 황진하 · 정하균 · 정수성 · 노철래 · 장윤석 · 성윤환 · 정해걸 · 강석호 · 김광림 · 이철우 의원 발의)
- 1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평창 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7시20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3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 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137항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의사일정 제 138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 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의 권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 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대리 권성동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소속 강원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 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 원 특별법안, 최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회관련시설에 식수전용 저수지 및 상수도시설을 포함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경기장 건설 국비 보조비율을 현행 30%에서 7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강원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회 관련 시설 및 특구개발사업 시행자가 강원도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은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회 개최지 시장·군수 의 협의체 구성 및 도지사의 조정 근거를 마련하 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2013충주세계조정선 수권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프레대회 지원근거와 대테러대책기구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권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 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은 평창동 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8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3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 무단(MINUSTAH)」 파견연장 동의안
- 14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 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141.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

의안

- 142.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 준동의안
- 143.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 14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동철·조영택·장 병완 · 문희상 · 신낙균 · 강기정 · 원혜영 · 강창일 · 김영진 · 홍영표 · 이성남 의원 발 의)

(17시26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39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파 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40항 국군부대의 「국 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 의안, 의사일정 제141항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42항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의사 일정 제143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대안), 의사일정 제144항 대한 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6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김동철** 존경하는 정 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 무단(MINUSTAH)」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이티 공화국에서 발생한 지진 대참사의 재해를 복구하 고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최초 파 견된 이래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단비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2차 연장하려 는 것입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 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최초 파견 된 이래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의 파 견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4차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 의안은 국제적인 핵물질 방호기준을 정한 다자협 약인 핵물질방호에 관한 협약이 2005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협약에 대하여 비준을 하려는 것입 니다.

넷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 준동의안은 인명살상이나 재산·환경 파괴를 목 적으로 핵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장치를 제조·소 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협약상 범죄로 규정 하고 각 당사국에 동 범죄를 국내법상 형사범죄 로 규정하여 처벌할 의무와 범죄인 인도 및 형 사·사법 공조를 상호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중국어선 불법조 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대안)은 정 옥임 의원, 신학용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결의안들 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보 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미합 중국 정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하려는 것으로 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 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결의안(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김동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 정화임무단(MINUSTAH)」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 의원님이 안 하시면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 다. 천천히 오십시오. 귀빈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의석에서 — 천천히 해요.) 밖에 한 두 분 더 안 계세요? 이제 커트라인에 걸렸습니다. 백원우 의원님 투표 하셨습니까?

(○백원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조 의원님, 천천히 투표 좀 해 주시지요.

최인기 의원님, 여상규 의원님 하셨습니까? 최인기 의원님은 안 하신 것 같은데?

(○현기환 의원 의석에서 — 하셨어요. 하신 것으로 나와요.)

그래요?

이한성 의원님 하셨고요?

한 분 더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0분 내로, 5분 내로 다 끝날 테니까 자리를 다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애주 의원님, 투표 하셨습니까?

이제 주광덕 의원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 단(MINUSTAH)」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 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5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핵 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 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 버튼을 안 누른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9인으로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중 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국회는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이 결의안과 이른바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을 우리국회가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을 기정사실 화 하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발효 중단 촉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효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 시키는 패착 중의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지금 발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발효되고 난다면, 일단 발효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ISD 조항이 시행되기 시 작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우리 대한민국 앞에 그 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100%로 열려지게 됩니다. 단 1건이라도 ISD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 되게 된다면 그리고 ISD뿐만 아니라 미국이 국 가 간 제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 문제에 대해 서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 라서 지금은 발효 절차를 중단시키는 국회의 노 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이에 대해서 는, 발효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다른 대책 법안 들을 통과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국회 등원 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효도 되기 전에 발효를 중단시키겠다는 노력 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19대 총선 이후에 국회 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지금의 야당이 각각 국민들에게 약속한 한미 FTA를 폐기시키 고 그리고 문제 있는 조항들을 재협상하겠다는 이 약속은 이 중차대한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행하기 매우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하신다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지금 채택할 것이 아니 라 발효 중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원점부터 논 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께,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 약속하셨던, 한미 FTA 발효 절차 중 단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민주 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떠나신다면, 그렇다 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 사정족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ISD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원안에는 ISD뿐만 아니라 네거티 브 리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지 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은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토의한 결과 고쳐졌다고 하는 이 수정안은 오로 지 ISD 하나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조항만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유보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문제들 은 일체 없는 것처럼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기본적인 문 제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이 미래를 헌납하는 각서라는 점이고, 래칫 메커니즘(Ratchet Machanism)이 심지어 스크린 쿼터조차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정부에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내법령 은 한미 FTA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ISD는 기본적으로 FTA 협정문 전체를 근거로 하는 분 쟁 제소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ISD를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 분쟁은 남습니다. 유통산업발 전법,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지원 법 이런 것들을 여야,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하셨다고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는 한 그 법을 아무리 만들고 개정해도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마치 ISD만 재협상되면 FTA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 로 비칠 수 있는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정안 은 부결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로 통상절차법에 재협상 국회가 요구하 면 정부가 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안을 저는 통 상절차법 제정안으로 냈지만 그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 습니까? 원내대표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를 하셔도 대통령이 지난 12월 22일에 원내 대표를 앞에 두고 '국회가 국격이 있지 무슨 재 협상 촉구 결의안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됐다면 심각한 국회 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거론하셨던 것은 한미 FTA 규정 내에 다시 재협상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 하러 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느 냐, 국격에도 어긋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미 FTA 에는, 22조2호에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공동위원

회에서는 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미국 정부가 개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개정의 권한은 미국 의회로 회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촉구 결의안은 지금 대통령의 말씀 으로 보건대도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 단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국민 앞에 한 야당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이 아니라 원점부터 발효절차 중단 결의안을 민 주통합당에서 제기하시고 야당이 힘을 모아서 통 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 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그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 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보합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3분을 더 기다렸습니다만 의결 정족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내 일 법안 처리에서 재상정을 하여 처리하도록 그 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재상정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좀 검토하고 또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의사국장은 내일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45.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정무위원장 제출)

(17시50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 의사일정 제145항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선숙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 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 안현대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 절차와 과정을 확인한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1항의 요건을 위반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무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감사 실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박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제가 절차를 밟을 테니까 조금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은 안건이 3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안건을 상정을 하고 아까

와 같이 내일 재상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 니다마는 혹시 또 다른 안건에 의결정족수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 다.

지금 이 안건은, 145항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재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내일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어차피 안 될 것 같습니다」 하 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안 건 세 가지는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재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87인)

.....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식 김 성 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창 수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학 재 김호연 김희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영 아 배 은 희 백성운 박 짉 박 희 태 백 원 우 백 재 현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유 성 이 은 재 이인제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혜훈 이 한 성 이 화 수 이 회 창 임동규 임 영 호 전 여 옥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미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세 균 정태근 정 옥 임 정의화 정진섭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정 하 균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호 영 조 진 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한 기 호 한 선 교 천 허 태 열 현기환 허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강기 갑 곽 정 숙 박선 영 이정희 홍 희 덕

기권 의원(3인)

정 이 애 주 정 두 언 김 (이낙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7인, 기권 의원 3인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195인)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 현 권 성 동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낙 성 김 동 철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 소 남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창 수 김충조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호연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기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백 성 운 백 원 우 박 진 박 희 태 백 재 현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준 원 희 목 유선호 유성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승 민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정선 이정현 이 재 오 이종구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혜 훈 이 한 구 이한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전 현 희 정 갑 윤 회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범 구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병국 최규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반대 의원(8인) 강 기 갑 곽 정 숙 김 재 윤 이정희 정 태 근 조 승 수 최경환 홍 희 덕 기권 의원(9인) 김 진 애 박 보 환 박선 영 배 은 희

변 웅 전

안 민 석

윤 상 현

이 진 복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창 일

곽 정 숙

조 문 환

(김재윤 의원 표결기 조작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95인, 반대 의원 8인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4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 천 강석호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충 환 김 정 권 김 태호 김 태 원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학 용 나성린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아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진 박희 태 배 은 희 변 웅 전 백 성 운 변 재 일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원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 승 민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두아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오 이정현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한성 이 찬 열 이 춘 식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옥 임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진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진 래 주 광 덕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영 최병국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연 희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황 진 하 반대 의원(49인)

김 동 철 金先東 김 영 환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진 애 김 학 재 김 희 철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은 수 박 주 선 백 워 우 백 재 현 서종표 송 훈 석 송 민 순 신 건 신 학 용 안 민 석 양 승 조 오 제 세 유선호 이 낙 연 이미경 유 성 엽 이석현 이 윤 석 이정희 이 한 구 임 영 호 장세 환 정 범 구 정세균 정장선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수 주 승 용 최 규 식 추 미 애 홍 영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11인)

강 성 종 권 영 진 김 성 식 김 정 이 성 남 김충조 박 대 해 유 재 중 조 영 택 전 현 희 정태근 (강성종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43인, 기권 의원 11인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동 성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박 기 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워 우 변 재 일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서 종 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아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선 호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낙 연 이두아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용 희 이 유 성 이 은 재 이정선 이 재 오 이 종 혁 이정희 이종구 이진복 이진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한성 이화수 이 혜 훈 임 영 호 장 광 근 임동규 임 해 규 장 세 환 장 제 원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몽준 정미경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정 식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진 수 회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추 미 애 최 연 희 최 영 희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정 두 언 정 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권 경 석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진 김 낙 성 김기 현 김 무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충조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학 재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박 희 태 배 은 희 진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종 표 성 윤 환 서 상 기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검 신 상 진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영 수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양 승 조 원 유 철 안 효 대 오 제 세 워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승 민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유석용 이 낙연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 병 석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오 이정선 이종혁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하 구 이 한 성 이혜훈 임 영 호 임 해 규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세 균 정미경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태 근 정 장 선 정진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조 배 숙 조 승 수 택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현 기 환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3인)

황 우 여

곽 정 숙 안 민 석 정범구

황 진 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 승 규 강 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동 성 김 동 철 김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조 김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충 조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호 김 태 환 학 송 김 학 용 김 김 형 오 김 학 재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영 아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상 진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이 병 석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오 이정선 이 정 혅 이 정 희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 철 우 이 한 구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이 화 수 장 병 완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세 균 정 수 성 정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태 근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승 수 조 영 택 주 광 덕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옂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허 첡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사 덕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애주

기권 의원(4인)

박 보 환 김성식 안 민 석 유 승 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종 강 석 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택 기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학 용 김 형 오 김희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우 순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혐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성 유 환 손 범 규 송민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아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유기준 원 회 목 유선호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옂 윤 진 식 이경재 유 이 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 범 래 이미경 이병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헌 이 애 주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정선 이 윤 성 이 재 오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혜 훈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임영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몽준 정 범 구 정미경 정양석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홋 회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허 태 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동 김성식 金先東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옥이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정권 김 진 애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기권 의원(1인)

김 동 성

황 진 하

이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권성동 권 택 기 석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 선 동 성 식 김 김 성 조 김성 태 김성회 세 김 여 김 소 남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충 조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류 근 찬 나성 린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박 회 태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심 재 철 신 영 수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목 유 선 호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두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성 헍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오 이정희 이 종 구 이종혁 이정 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희 수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정 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영 짉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회 최영희 최인기 한 기 호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혀 기 확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홍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동성 金先東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재 현 백 성 운 백 원 우 변웅전 서 상 기 서종표 변 재 일 송 훈 석 성윤환 손 범 규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안 경 률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재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윤 이경재 이두아 이 명 규 윤 진 식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이 영 애 이 용 섭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윤 성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한 구 이 화 수 이혜훈 임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몽준 정 갑 윤 정 미 경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회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곽 정 숙 안 민 석 이 낙 연 김 정 권 정 해 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성수 김 동 철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옥이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반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성 범 신 건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신 지 호 안 홍 준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승 민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경 재 이낙연 이두아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 헍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오 이정 현 이 종 구 이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혜 훈 이 춘 이 찬 열 식 이한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현 정 갑 윤 전 회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양 석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문 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짓 옂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강 기 갑 곽 정 숙 조승수 홍 희 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33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권 경 석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성동 권 택 기 김무성 김 기 현 김 성 수 김성 태 세 김 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옥 이 용 태 김 유 정 김 김 재 경 김 충 조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 호 김 학 송 학 용 김호연 김 김 효 석 나성린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순 자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짉 배 은 희 백 원 우 배 영 식 백 성 운 백재 쳙 변 재 일 서 상 기 손 범 규 신 영 수 신 성 범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아 효 대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일 호 유 정 현 윤 상 현 이 낙연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 명 규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성 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화 수 이 한 성 장 광 근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미경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옥 임 정 정 의 화 정 진 섭 태 근 정 하 균 정 정희수 조 배 숙 조 원 진 정 해 걸 조 진 래 주 광 덕 조 정 식 조 진 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병 국 최경희 최 종 원 최 연 희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욱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48인)

강 기 갑 강성종 강 창 일 곽 정 숙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조 영 화 金先東 김 옂 록 김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애 김 희 철 류 근 찬 박 병 석 박 상 천 박 은 수 서 종 표 송 훈 석 신 신 상 진 건 신 학 용 안 민 석 양 승 조 오 제 세 이미경 유성엽 이석현 이성남 이 윤 성 이 정 희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세 환 정 범 구 정세균 정장선 조 승 수 조 영 택 조경태 주 승용 최영희 최 인 기 홍 희 덕 기권 의원(21인) 권 영 진 김성식 김 영 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대 해 박선 영 박 영 아 박 주 선 유 재 중 송 민 순 유 승 민 윤 상 일 이 용 섭 이 한 구 장 제 원 전 현 희 정 두 언 조 문 환 최 규 식 추미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흥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영 진 권 택 기 권 성 동 김 기 현 김 무 성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성조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호연 김 효 석 김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진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송 민 순 신 건 신 학 용 신 상 진 신 영 수 신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워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승 민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명 규 이 범 래 이 병 석 이석현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 정 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삼 이 춘 식 이진복 이 찬 열 이 혜 훈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재 희 전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갑 윤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태 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승 수 조 영 택 주 광 덕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종원 최 규 식 최 연 희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현기환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박은수 이미경 정 범 구 최 영 희 최인기

기권 의원(8인)

강성종 김 영 록 김 재 균 김 진 애 신 성 범 이 낙연 임 영 호 조 경 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학 용 김호연 김 김 희 철 김 효 석 나성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반대 의원(1인)

첡

정범구

홍 영 표

황 진 하

허

기권 의원(8인)

장기갑 강성종 강성천 곽정숙 金先東 김태호 주호영 홍희덕

현 기 환

홍 정 욱

홍 사 덕

황 우 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허 태 열

홍일 표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기 현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金先東 김 성 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영 김 영 환 김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재 경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나성 린 김 희 철 류 근 찬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진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백 원 우 변웅전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훈 석 손 범 규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현 유 재 중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이경재 이명규 윤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정 현 이 주 영 이종구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이한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제 원 임 해 규 장 세 환 전 여 옥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문 환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황 우 여 황 진 하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유정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강 창 일 곽 정 숙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동 성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성 태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 유 정 김용구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애 김충조 김 태 원 김 진 표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영 아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성 윤 환 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건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원 희 목 오 제 세 원 유 철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상권 이 사 철 이 석 혀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 정 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전 현 희 정갑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범구 정 미경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태 근 정 하 균 정 정희수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전 혁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래 주 광 덕 조 진 형 주 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인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정 욱 황 우 여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6인)

안 민 석 유선호 정 옥 임 조 배 숙 최 영 희 진 수 희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6인)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성 회 김세연 김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재 경 김 재 균 김 김 진 애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용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호연 김희철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워 희 목 우 윤 근 원 유 철 유성엽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상 현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 주 영 이 종 구 이정 쳙 이정희 이진복 이 한 구 이 찬 열 이 춘 식 이한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세 환 임 해 규 장 제 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범 구 정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 진 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동 철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호연 김 형 오 노 영 민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진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검 신 성 범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우 유 근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영 이경재 이두아 윤 진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오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식 이 한 구 이 한 성 \circ 혜 이 화 수 훈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제 원 여 옥 전 재 희 전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옥 임 의 화 정 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문 환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병국 최경환 최 규 식 최인기 종 워 추 미 애 최 연 희 최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영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강기갑 곽정숙 정범구 조배숙 최영희

○해양경비법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 성 조 김 세 연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 영 진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학 송 김충환 김 태 워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아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박 진 배 영 식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범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상 진 신 성 범 건 신 지 호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두아 이 명 규 이경재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 애 주 이 성 남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 혅 이정희 이종구 이 진 복 이 주 영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식 이 하 구 이혜훈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전 현 희 정미경 정범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짓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 경 희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사 덕 홍일 표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金先東 안 민 석 진 수 희 추 미 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곽 정 숙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표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학 용 김 형 오 김 나성 린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배 은 희 짓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지 호 안 경률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유 근 워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유정복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영 윤 진 식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유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화 수 이 철 우 이 하 구 이혜훈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갑윤 정 두 언 정세 균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의화 정 영 희 정 해 걸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영 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주 승용 진성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최인기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5인)

조 전 혁

변 재 일

서 상 기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기 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옥이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희철 노 영 민 문 학 진 나 성 린 박 근 혜 박 민 식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웅 전

서 종 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민 순 신 상 진 신 건 신 영 수 신지호 심 재 철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오 제 세 원 회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승 민 윤 상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성 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유 석 이 은 재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한 구 이혜훈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장 제 원 임 해 규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경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추미 애 한 기 호 허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첡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곽정숙 김재균 류근찬 정범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진 권 택 기 권 성 동 김기 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호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순 자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배 은 희 진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성 윤 환 서 상 기 서 종 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검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유선호 유성엽 유 승 민 유 재 중 유정복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윤 영 이 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정선 이종혁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구 이혜훈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제 전 재 희 전 현 희 원 정 갑 윤 정 두 언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하 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경태 조 영 택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호 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화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인 기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황 우 여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박선 영 정세 균 최영희 추 미 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89인)

강 길 부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성수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재 경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나 성 린 박 기 춘 노 철 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준 선 박 배 영 식 백 워 우 짉 백 성 운 변웅전 서 상 기 손 범 규 송광호 신 영 수 신지호 안 경 률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정복 유 일 호 윤 상 일 유 석 용 이 낙연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명 규 이상권 이성헌 李玲愛 이용회 이 은 재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주 영 이정현 이 종 구 이정선 이화수 이 철 우 임 영 호 임 동 규 장 광 근 정 몽 준 정 미경 정 수 성 정양석 정의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정 식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최경환 최경희 한 기 호 허 천 현 기 환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74인)

강 창 일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성종 곽 정 숙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식 김 영 진 김 영 록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진 애 김 태 원 김 효 석 김 희 철 류 근 찬 문 학 진 박 상 은 박 주 선 박 병 석 박 은 수 백 재 현 변 재 일 송 민 순 서 종 표 신 성 범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학 용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유 재 중 양 승 조 오 제 세 유 성 엽 이미경 이 사 철 이성남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정 희 이종혁 이 찬 열 이한구 이 혜 훈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범 구 정 세 균 정 태 근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전 혁 차 명 진 최규식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33인)

강 명 순 강 석 호 권경석 김성조 김성회 김 장 수 김 충 조 김 태 호 문 희 상 박 보 화 박선 영 박 순 자 배 은 희 성 윤 환 심 재 철 안 효 대 우 윤 근 유정현 이 범 래 윤 상 현 이 애 주 이진복 임 해 규 장 제 원 전 현 희 정 회 수 정 영 희 정 하 균 조 진 형 주 승 용 주호영 최 병 국 최 연 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 현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성수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소 남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손 범 규 송광호 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건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원 유 철 양 승 조 오 제 세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윤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상권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은재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범 구 정 갑 윤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해 걸 희 수 정 하 균 정 조 경 태 조 영 택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원 진 주 승용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종원 최 영 희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첡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현 기 환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7인)

강길부 강성천 김낙성 류근찬 백원우 백재현 이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7인)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수 김 성 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정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희 철 김 효 석 나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주 선 박 배 영 식 진 백 성 운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일호 유 재 중 유 성 엽 유 승 민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유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윤 영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성 남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회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정희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한 구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유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양석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진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정식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병국 최규식 최 연 희 최영희 최종원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정의화 추 미 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승 규 강 창 일 강 석 호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환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용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류 근 찬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짓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변 재 일 성 윤 환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현 윤 상 일 유 석 용 영 이경재 윤 윤 진 식 이 낙 연 이명규 이 병 석 이미경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헌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 섭 李玲愛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 회 이 종 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혜 훈 이 철 우 이 한 구 이화수 임 해 규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전 재 희 장 제 원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미경 정 범 구 정 정세균 정 수 성 양 석 정 영 희 정 정 옥 임 정의화 진 섭 정 하 균 정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광덕 주 승용 조 정 식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경희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허 태 열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재 균 박선영 이 성 남

(최경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6인, 기권 의원 3인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0인)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연 희 최인기 최병국 최영희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홍 일 표 기권 의원(2인)

서종표 조전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 석 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성 태 김성회 김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회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진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지 호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쳙 유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성 남 이성헌 이애주 이 영 애 李玲愛 이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한 구 이 혜 훈 이 철 우 임 영 호 임 해 규 이화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갑 윤 정범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해 걸 정희수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차 명 진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허 태 열 한 기 호 허 첡 홍일 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기권 의원(1인)

찬성 의원(80인)

장세환

강석호 강 승 규 김기 현 고 흥 길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옥이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나 성 린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진 백 성 운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신 영 수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원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상 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희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 철 우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정몽준 정미경 정 갑 유 정 옥 임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경태 조 원 진 주 광 덕 짓 옂 최경환 최경희 한 기 호 허 천 홍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6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곽 정 숙 권성동 권 영 진 김 낙 성 金先東 김성회 김 영 진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효 석 김희철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기 춘 노 영 민 박 병 석 박 은 수 박 주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종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학 용 신 건 신 상 진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유선호 이미경 이성남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 유 성 이정희 이 차 열 이 한 구 이혜훈 정 범 구 장 세 환 정세 균 정 태 근 조 승 수 조 영 택 최종원 조 전 혁 최 규 식 최 인 기 추 미 애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43인)

강 명 순 강성 천 고 승 덕 권경석 권 택 기 김성수 김성조 김성식 김 영 환 김 영 록 김용 태 김 충 환 김 태호 김 태 원 문 희 상 박 보 환 배 은 희 변 웅 전 신 성 범 심 재 철 이 사 철 안 효 대 우 윤 근 유성엽 이 석 혀 이성헌 이종 혁 이 진 복 임 해 규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양석 정 영 희 정 하 균 조 문 환 주 승용 주 호 영 최 병 국 최 영 희 최 연 희 허 태 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영 우 김 영 진 김 소 남 김 김 옥 이 김용 태 김 영 환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충조 김 진 표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희 철 김호연 김 효 석 나성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아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종 근 박 준 선 박 배 은 희 백 성 운 짓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성 윤 환 서종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송 민 순 신 검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양 승 조 워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정복 유정현 유 일 호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성헌 李玲愛 이용섭 이용회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세균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영 희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허 첡 한 기 호 허 태 열 홍 사 덕 홍 희 덕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곽 정 고 승 덕 고 흥 길 숙 권경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진 애 정 김충조 김충환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학 용 김호연 나성 린 김 효 석 김희 철 노 철 래 문 학 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성 유 환 송광호 서 종 표 손 범 규 송 훈 석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홍 준 안 경 률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유 근 워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명규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혀 이성 헍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세 화 장 제 원 정 두 언 전 재 희 전 현 희 갑 윤 정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옥 임 정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정 해 걸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황 진 하

박선영 최영희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고 승 덕 권 경 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소 남 김 옥 이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호 김 형 오 김희철 김호연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배 은 희 박 준 선 진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일호 유 기 준 유선호 유성엽 유정복 유정 윤 상 일 윤 상 현 현 유 석 용 영 유 진 식 이경재 윤 이 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 사 철 이상권 이 석 현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 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한 구 이 찬 열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세 환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경 정 범 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회 수 조 경 조 문 환 조 배 숙 정 태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호 짓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한 기 호 최종원 추 미 애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성조 안 홍 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우 영 환 김용 태 김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호연 김 형 오 김효 석 김 희 철 류 근 찬 노 영 민 나성린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성윤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사 철 이 낙 연 이명규 이미경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헍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회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 이정희 이 종 구 이종혁 혅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화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미경 정 두 언 정 몽 준 정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태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워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최경환 진 성 호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최규식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태 열 현 기 환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흥길 곽 정 숙 권 택 기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희철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백 성 운 변웅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성 범 신 건 신 상 진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효 대 원 유 철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희 목 유성 유기준 유선호 엽 유정복 유일호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정 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한구 이진복 이 찬 열 이철우 임 해 규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화 장 제 원 전 현 희 정 두 언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의 화 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 회 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차 명 진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회 최인기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허 천 홍 영 표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홍 희 덕 홍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안 홍 준 김성수 윤 상 현 정 옥 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무 성 김 동 성 김 낙 성 김 동 철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영 록 김 영 우 김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영 진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진 애 김충조 김충환 정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김희철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종 근 박 박 준 선 짓 배 은 희 백 재 현 백성운 백 원 우 변웅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건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유 진 식 이경재 유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애 주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정선 이정 이 인 기 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화 수 임동 규 임영호 장 광 근 임 해 규 장 병 완 전 재 희 장 세 환 장 제 원 정갑윤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세 균 정 영 회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태근 정희수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성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한기호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허 첡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황 우 여 홍일 표 홍 회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진 표 아 홍 준 홍 영 표 (조정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91인, 찬성 의원 188인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강 석 호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동성 김동철 김 무 성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충조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화 박 상 은 박선 영 박 영 아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서 상 기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규 백 안 경 률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안 민 석 우 윤 근 원 유 철 오 제 세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성엽 유 일 호 유 정 현 유정복 윤 상 일 윤 상 현 영 윤 진 식 이경재 유 석 용 윤 이 낙 연 이미경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주 영 이종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성호 차 명 진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최규식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태 열 현기환 허 천 홍 영 표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강성종 이 명 규 이석현 정 옥 임 (최인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0인, 기권 의원 4인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정숙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동 성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세 김 영 록 김 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영 김 옥 이 김용 태 환 김 재 균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정 김 진 표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희 철 문 희 상 나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병 석 박선 영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학 용 신 건 신 상 진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성 엽 유 일 호 유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윤 진 식 이 명 규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성 헌 이 애 주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 혀 이정희 이 종 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현 회 정 두 언 전 정 갑 윤 정 몽 준 정미경 정 수 성 정양석 정 의 화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회 수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주 광 덕 주 승 용 조 원 진 조 진 형 진 성 호 차 명 진 최경환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진 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9인)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영 세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진 김 무 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金先東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충조 김 충 환 태 김 태호 김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희 철 문 희 상 노 영 민 나 성 린 문 학 진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백 원 우 변 웅 전 서 상 기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민 석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윤 진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희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circ 진 복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화 수 임 영 호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제 전 재 희 장 원 정 몽 준 정 미경 정 범 구 정 갑 윤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태 근 정 진 섭 정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영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 종 원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허 태 열 허 첡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흥길 곽 정 숙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세 연 金先東 김성회 김성식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희 철 나성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회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유 상 현 유 석 용 윤 진 식 윤 옂 이 명 규 이미경 이경재 이 낙 연 이 사 철 이상권 이성헌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찬 열 이 한 성 이진복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주 광 덕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승 용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희 짓 옂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한 기 호 최인기 최종원 추미애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성수 김 옥 이 노 철 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기 갑 강성종 강성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흥 길 고 승 덕 곽 정 숙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 성 회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 태 김 을 동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문 학 진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진 백 워 우 백 재 혀 변웅전 변 재 일 손 범 규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이 낙 연 윤 진 식 이경재 윤 영 이 명 규 이미경 이 사 철 이상권 이 석 현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윤 성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정 회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정 두 언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미경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의 화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주 승용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진 형 진 수 희 주 호 영 진 성 호 영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허 태 열 천 홍 일 표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나성린 안경률

(김효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77인, 찬성 의원 175인임)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을 동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충조 정 김 태 워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진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지호 신 검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선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애주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인기 이 정 선 이 정 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한성 임동규 이 찬 열 이 화 수 임 해 규 장 제 원 임 영 호 장 광 근 전 재 희 정갑유 정 두 언 정몽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미 경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회 수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수 희 주 승 용 진 성 호 차 명 진 최경희 짉 옂 최경화 최병국 최규식 최 연 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홍 영 표 현기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황 진 하 홍 희 덕

기권 의원(3인)

김성수 박은수 최인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81인)찬성 의원(177인)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길 부 강석호 강 성 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 태 김 을 동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태 원 김 김충조 김 충 환 정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노 영 민 문 학 진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은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종표 손 범 규 서 상 기 성 유 환 송 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유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상 권 이 사 철 이석현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용 희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몽준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진섭 정 해 걸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영 택 조 정 식 주 승 용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추 미 애 최연회 최인기 최종원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김 영 선 이 한 성 이 화 수 홍 희 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고 승 덕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진표 김충조 김 태 호 김충환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김희철 나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아 규 백 아 민 석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우 윤 근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윤 영 이경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용희 이 영 애 이 윤 성 이정선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임동규 이 화 수 임 해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정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태 열 혀 기 화 허 첡 홍 영 표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이 한 성 이 용 섭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영 세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 낙 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옥 이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문 학 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진 박 준 선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서종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심 재 철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민 석 아 효 대 우 윤 근 원 유 철 양 승 조 오 제 세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영 윤 진 식 유 석 용 이경재 이미경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 혅 이정 회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수 성 정 몽 준 정 범 구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배 숙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영 조 원 진 조 정 식 택 조 진 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노철래 이용섭 주호영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조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선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 태 김 유 정 을 동 김 장 수 김 김 정 김 충 조 김 재 균 김 진 표 김 태호 김 학 송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효 석 회 나성 린 김 철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보 환 박 병 석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박 준 선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변 재 일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윤 진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사 철 이석현 이 애 주 이 상 권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용 이용희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 주 영 이진복 이정희 이 종 구 이 찬 열 이한성 임동규 이 화 수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의 화 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해 걸 정 회 수 정 조 문 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정 식 주 광 덕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허 첡 현 기 환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4인)

김충환 안민석 조영택 차명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성 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유 정 김을 동 김옥이 김 장 수 김 진 표 김 재 균 김 정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박 병 석 박 보 환 문 희 상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목 워 유 철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사 철 이성헌 이애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화 수 이 찬 열 이 한 성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옥 임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태근 정 하 균 정진섭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주 승 용 주 광 덕 조 정 식 조 진 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천 허 허 태 열 홍 영 표 현기환 홍 사 덕 홍일 표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성식 김 영 선 손 범 규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성수 김성식 성 조 김성회 김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 태 김 을 동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태 화 김 학 용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백 워 우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상 진 건 신지호 신 학용 안 경 률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 정 복 윤 상 일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상 현 윤 진 식 윤 영 이경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헌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희 李玲愛 이 용 섭 이 유 석 이 인 기 이정현 이정 선 이 주 영 이정희 이종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한 성 이화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진 섭 정 회 수 조 문 환 조 승 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회 영 최경희 진 차 명 진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최인기 최종워 한 기 호 허 태 열 홍 사 덕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 영선 이 미 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41인)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유 정 김 을 동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정 김 충 환 김 태 워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주 선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워 우 변웅전 변 재 일 서 상 기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신 건 안 경 률 아 민 석 오제세 안 효 대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이 명 규 유 이경재 이 낙 연 이 애 주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주 영 이인기 이정선 이 종 구 이진복 이 찬 열 임 영 호 임 해 규 장 제 원 전 재 희 장 광 근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해 걸 조 문 환 정 하 균 조 경 태 주 광 덕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옂 차 명 진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한 기 호 허 천 혀 기 확 홍 사 덕 허 태 열 홍 일 표 황 우 여

반대 의원(13인)

강기갑 곽정숙 김영록 김영선 박은수 양승조 이정희 임동규 전병헌 조승수 최종원 추미애 홍희덕

기권 의원(5인)

강성종 김영우 서종표 송민순 정범구

(강창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59인, 찬성 의원 141인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성종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성동 권 영 세 권 택 기 권 영 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표 김 정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철 래 문 학 진 박 기 춘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짓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워 우 변웅전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목 원 유 철 유선호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이경재 윤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사 철 이상권 이 애 주 이 용 섭 李玲愛 이 영 애 이 유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재 희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승 수 주 광 덕 조 워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태 열 혀 기 화 허 첡 홍 일 표 황 우 여 홍 사 덕 홍 희 덕

반대 의원(1인)

김 영 선

기권 의원(2인)

정 두 언 유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수 김 세 연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워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나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기 춘 박 대 해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백 재 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서종표 송 광 호 송 훈 석 신낙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건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효 대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우 윤 근 원 유 철 오 제 세 워 희 목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현 윤 상 일 윤 윤 석 용 영 유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윤 성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임 해 규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장 병 완 장 광 근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수 성 전 현 희 정세 균 정양석 정 영 회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 회 수 조경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성호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최경환 최규성 영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인 기 한 기 호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홍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손 범 규 조 문 환

(장광근·차명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 제 투표 의원 170인, 찬성 의원 168인, 기권 의원 2인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고 승 덕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성수 김성식 김 영 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정권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확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나성린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백 원 우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서병수 서종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검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오 제 세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진 식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군현 이 범 래 이석현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李玲爱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은 재 이정선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주 영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화수 이 한 구 임동규 이 춘 식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정 두 언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범 구 정세 균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짓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원 제 허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1인)

진 수 희

기권 의원(2인)

김 동 철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김 낙 성 김동성 김기 현 김무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 영 선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 재 현 서병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규 백 양 승 조 우 윤 근 안 효 대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상 일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은 재 이 윤 성 이인기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여 옥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범 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양석 정의화 정장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연 희 최규식 한 기 호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사 덕 허 천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이낙연·진수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 제 찬성 의원 171인, 기권 의원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69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세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 성 식 김성조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 장 수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권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김 형 오 김 효 석 나 성 김 혜 성 린 남 경 필 노 영 힏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박 병 석 박 보 환 해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쳙 서 병 수 송 광 호 서종표 손 범 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안 규 백 안 민 석 률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원 유 철 오 제 세 원 희 목 유기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용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주 영 이정선 이 정 회 이 종 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한 구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혀 희 정 두 언 수 성 정 정 양 석 정 영 정의화 회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희 수 조 문 환 정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조 해 진 진 성 호 차 명 진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첡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 범 래

기권 의원(2인)

이화수 정세 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고 승 덕 강 승 규 강 창 일 강성 천 고 흥 길 곽 정 숙 궈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김기현 낙 성 김 동 성 세 김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관 김성식 김성수 김성조 김 성 태 세 연 김 영 록 영 김 영 우 김 김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표 김 진 애 김춘 진 김충조 김 태 워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박 근 혜 노 철 래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대 해 박 기 춘 박 병 박 보 환 석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배 영 식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상 일 윤 석 용 윤 윤 영 유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이석현 래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은 재 0]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종구 이 정 회 이 주 영 이 진 복 찬 열 이 한 구 0]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임 해 규 장 병 전 여 옥 재 전 현 희 완 전 회 정 두 언 정세 균 정양석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장 선 정 진 섭 정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진 성 호 용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 워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홍 사 덕 홍 영 표 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안홍준 이화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강 승 규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 영 선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호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화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박 근 혜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주 선 박선 영 박 영 아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아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영 유 이 낙 연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명규 이석현 이성남 이 범 래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정선 이 진 복 이 주 영 이정희 이 종 구 이 차 열 이 한 구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 태 근 정진섭 정희수 정 하 균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광 덕 주 승 용 조 진 형 조 해 진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미에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곽 정 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석호 강 길 부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수 김성 곤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백 워 우 박 짓 배 은 희 백 재 현 서병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낙 균 건 신 성 범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 낙 연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성 남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은 재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주 영 이정 이정희 이 종 구 선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해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수 희 주 승 용 진 성 호 짉 옂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홍 사 덕 한 선 교 허 첡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송 광 호

(권영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7인, 기권 의원 1인임)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정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문 희 상 노 영 민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백 원 우 백 재 현 배 은 희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낙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형 환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윤 석 용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명규 이 범 래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하 구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임 해 규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규성 최 규 식 최연회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원 제 홍 영 표 허 첡 홍 사 덕 홍 일 표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진 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영 진 김기 현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영 우 김용구 김 김 을 동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정권 김 정 훈 진 애 김 진 표 김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호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순 자 박 준 선 반 배 영 식 배 은 희 짓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형 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성엽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석 현 이 애 주

李玲愛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주 영 이정선 이정희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전 여 옥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수 성 정세 균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해 진 주광덕 조 윤 선 조 진 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옂 최병국 차 명 진 최규성 최 규 식 최연회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허 첡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성헌

기권 의원(11인)

김 낙성 박 병 석 박 선 영 안 상 수 유 정 복 이 범 래 이 성 남 이 종 구 이 한 구 조 전 혁 홍 사 덕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흥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낙 성 김 기 현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노 철 래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우 윤 근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섭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윤 성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임 해 규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전 현 희 정세 균 정 의 화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조 해 진 주 승 용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최규식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김성회

때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조 긲 성 식 김 영 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기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짓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종표 서 상 기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유기준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성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승 민 유정복 윤 석 용 유정현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석 현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성 이인기 이정희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한 구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정 두 언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경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해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영 차 명 진 최 규 성 짓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홍 사 덕 천 황 우 여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박 보 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환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진 애 김 태 원 김 학 송 김 충 조 김 태 호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남 경 필 노 철 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영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영 식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병수 서종표 송 민 순 서 상 기 손 범 규 송 훈 석 신 검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성엽 유 기 준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승 민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낙연 윤 진 식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화 수 이 한 구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혀 희 정 두 언 정세균 정양석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해 진 조 진 형 주광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영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희 최 영 희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홍 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충 조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호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병 석 박 기 춘 박 순 자 박 우 순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혀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성 범 신 학 용 신 검 신 낙 균 안 규 백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명규 이범래 이성남 이 애 주 이석현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 혅 이정희 이종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하 구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병 완 전 여 옥 장 광 근 전 재 희 전 현 희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정태근 정희수 조 경 태 정 하 균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최병국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 인 기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정 두 언 안 상 수 차 명 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1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곽 정 숙 권경석 권 영 진 권성동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동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성 수 金先東 김 김 성 식 김성회 김 세 연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재 균 김 정 권 김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태호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선 영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박 배 은 희 백 재 현 진 백 원 우 서병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낙 균 건 신 성 범 신 학용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성엽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명규 이 범 래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성 남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정현 이종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임 영 호 장 광 근 임 해 규 전 여 옥 장 병 완 전 현 희 전 재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양석 정 수 성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진 섭 정희수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회 진 차 명 진 최규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영 희 최 연 희 최인기 최 종 워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영

천

기권 의원(2인)

김 영 선 임 동 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과하 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6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기현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 세 연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정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철 래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박 짉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신 낙 균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아 형 환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 복 유 승 민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한 구 임 영 호 이 춘 식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의화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워 진 조 윤 선 조 해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회 최 규 식 짓 영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한 기 호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6인)

김 낙 성 金先東 박 준 선 이정희 차 명 진 홍 희 덕 (신성범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7인, 기권 의원 6인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낙 성 김 기 현 김동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충조 김 정 훈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백 재 현 박 배 은 희 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건 신 성 범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정 복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윤 석 용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유 성 이 재 오 이인기 이정현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정세 균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5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권경석 고 흥 길 권성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 장 수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송 훈 석 서 상 기 손 범 규 송 민 순 신 학 용 안 경 률 신 건 신 낙 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유 진 식 이 군 혀 이 낙 연 이경재 이 명 규 이 애 주 이 범 래 이성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유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두 언 정장선 정 태 근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옂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 회 최영희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신 성 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정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짉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낙 균 건 신 학용 신 성 범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회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정현 이정희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화 수 임 영 호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임 해 규 전 현 희 정 수 성 전 재 희 정 세 균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해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호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규성 최병국 최연 희 최 규 식 최영희 최종워 추 미 애 한 기 호 현 기 환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정 두 언

(양승조 의원 표결기 조작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78인, 기권 의원 1인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은 희 진 백 원 우 백 재 현 서병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성엽 유 일 호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재 중 유정복 윤 상 일 유정현 이경재 유 석 용 윤 옂 윤 진 식 이 군 현 이명규 이 범 래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회 이 은 재 이 재 오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구 이정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정범구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수 성 정세 균 정 양 석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희수 정 하 균 조경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규성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송 민 순 이 낙 연 정 두 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조 김 성 회 김세연 김 영 선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짉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송 민 순 성 윤 환 손 범 규 신 학 용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원 회 목 원 유 철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낙 연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은 재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성 이인기 이정 선 이정현 이정희 이 주 영 이종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화수 임동규 임 해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조 해 진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현 기 환 홍 희 덕 황 우 여 홍일 표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김 정 권 신 성 범 안 민 석 이 재 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 창 일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 장 수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권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재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배 영 식 진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서 병 수 재 쳙 서 상 기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률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우 윤 근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혅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오 이정선 이 정 현 이종구 이정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의화 정 정 장 선 정 진 섭 태 근 정 하 균 정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윤 선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종 원 추 미 애 최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성수 김영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구 상 찬 권 경 숙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 세 연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 소 남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진 애 김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학 진 노 영 민 박 기 춘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희 목 우 윤 근 원 희 룡 원 유 철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영 유 이 낙 연 이 군 현 윤 진 식 이 경 재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석 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용 섭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이 은 재 이 인 기 성 이재오 이정 이정현 이정희 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찬 열 이진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화 수 임 영 호 장 광 근 임 동 규 임 해 규 전 재 희 장 병 완 장세 환 전 여 옥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윤 선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병국 짓 영 최경환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홍 사 덕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최 영 희 기권 의원(2인) 김 영 선 유 석 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진 권 성 동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성 김성회 세 연 태 김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윤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워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영 식 박 짓 배 은 회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송 광호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낙 균 신지호 건 신 성 범 안 경률 안 민 석 신 학용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정복 유 일 호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은 재 이 재 오 이인기 이정현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철우 이 하 구 이 춘 식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조 문 환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회 최경환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종워 추 미 애 한 기 호 최 인 기 한 선 교 홍 사 덕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박기춘 조원진

(최인기 의원 착오로 정범구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86인, 찬성 의원 184 인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승 규 강 창 일 강 석 호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 유 정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재 윤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학 재 김혜 성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박 대 해 박 병 석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보 환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검 신 낙 균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양 승 조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윤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형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성 남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유 성 이은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현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하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승용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식 최경환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최인기 의원 착오로 정범구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위원 189인, 기권 의원 없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고 승 덕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성식 김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충 화 김 태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상 기 변 재 일 서 병 수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낙 균 건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률 아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오 제 세 원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 낙연 이명규 이 경 재 이 범 래 이 애 주 이 사 철 이 성 남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하 구 임 영 호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최경환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최종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성 윤 환 신 성 범 이 윤 성 (추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4인, 기권 의원 3인임)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정권 김정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충환 김 태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성 남 경 필 김 효 석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노 영 민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송광호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취 검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유 근 워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유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영 이병석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여 옥 전 혀 희 전 재 희 정 두 언 정양석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문 환 조 경 태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광덕 주호영 최경환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홍 사 덕 허 첡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 은 재

(이경재·장병완 의원 착오로 박종근·김우남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82인, 기권 의원 1인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김 기 현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수 김 세 연 김성식 김성회 김성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소 남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정훈 김 춘 진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태호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성 남 경 김 효 석 나 성 린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오 제 세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명 규 이 범 래 이 낙연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정희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해 규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표 홍희덕 황우여 기권 의원(3인)

김 성 곤 백 재 현 신 지 호 (권성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9인, 기권 의원 3인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무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수 김성 곤 김성식 김 성 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호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은 희 진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성 윤 환 신 신 낙 균 신 상 진 건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제세 안 효 대 우 유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윤 영 이 낙연 이경재 이 명 규 이 범 래 이 병 이 사 철 석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정선 이 재 오 이정 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수 성 정양석 정세 균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의 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윤 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 병 국 영 최연회 최 영 희 최인기 최 종 원 한 기 호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천 홍 영 표 홍일 표 혀 기 화 홍 사 덕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 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 성 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용 태 김 영 선 김용구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태호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 성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근 혜 노 철 래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박 진 배 은 희 서 병 수 성 윤 환 송 광 호 서 상 기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안 규 백 안 형 환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 석 용 유정복 유정현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명규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현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하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장 광 근 임 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세 균 정 수 성 전 현 희 정 정 양 석 정 영 희 의 화 정 장 선 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경태 조 영 택 조 문 환 조 윤 선 조 워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호영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연 희 최 인 기 최 규 식 최 영 희 추 미 애 최 종 워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 을 동 김 춘 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진 권성동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 관 김성수 김성식 성 조 김성회 김 김세연 영 록 김 영 선 김 소 남 김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재 균 김 재 윤 김 김정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선 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오 제 세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 영 李玲愛 애 이용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정회 이 찬 열 이 철 우 이화수 이 한 구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여 옥 정세 균 전 재 희 전 현 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희 덕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정 두 언 이 한 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영 김세연 김 소 남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유 김 정 훈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혜 성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송광호 서 상 기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상 진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아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우 윤 근 원 희 룡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 해 규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여 옥 전 현 희 전 재 희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문 환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해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최 규 식 진 영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현 기 환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진

기권 의원(1인)

정 두 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김기현 권성동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학 재 김 효 석 김 김 혜 성 나 성 린 경 노 철 래 남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우 순 박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백 원 우 백재 혅 서 병 수 서 상 기 송 광 호 송 훈 석 성 윤 환 송 민 순 신 상 진 취 검 신 낙 균 신 성 범 안 경률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 이 낙연 이 명 규 재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이용 이 윤 성 이 은 재 섭 회 이 재 오 이정 선 이정현 이정 회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한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해 장 광 근 장 병 완 규 장 세 환 여 옥 전 현 희 전 전 재 희 세 균 정 두 언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의 정 장 선 정 태 근 정 정 화 정 하 균 해 정희수 조 경 정 걸 태 조 문 환 조 영 조 윤 선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 환 최 규 식 최병국 최 영 희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춘 진 배 은 희 이 인 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경 권 성 동 권 석 권 영 진 김기 현 동 성 김 동 철 김 김무성 김 상 희 성 곤 김성수 김 김 성 김성조 성 김 영 록 식 김 회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용 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정 김 진 애 김 궈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호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박 기 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서병수 배 영 식 백 재 혅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학 용 신 낙 균 신 성 범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원 희 룡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정 윤 석 용 유 현 윤 옂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병석 이 사 철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이 용 섭 애 이용희 이 윤 성 인 기 이 재 오 0] 이정 이정희 종 구 이 주 영 선 이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영 임 해 규 임 ट्रे 장 광 근 장 세 환 여 옥 전 재 희 전 정 두 언 병 국 전 현 희 정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승 주 호 영 진 수 회 용 짉 성 호 최경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조 해 진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69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동성 김 동 철 김 기 현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나성린 남 경 필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서 병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워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 복 유 승 민 유정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 병 석 이 사 철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용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희 이종구 이정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영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회 정장선 정 태 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한 기 호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홍일표 홍재형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성조 장병완 정두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80인)찬성 의원(178인)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김동성 김 무 성 김동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영 선 김성태 김 소 남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워 우 서 병 수 성 윤 환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낙 균 신 상 진 건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명규 이 범 래 이 성 남 이 병 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인기 이용희 이 재 오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정 회 이 철 우 이 찬 열 이 한 구 이한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장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승 용 조 해 진 주 광 덕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회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허 첡 혀 기 화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 영 록 김 진 애

찬성 의원(183인)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인 기

이 재 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곽 정 숙 고 승 덕 고흥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성 태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장 수 김 정 김정권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환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김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대 해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오 제 세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워 희 룡 워 희 목 워 유 철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영 이 명 규 유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범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한 구 이 철 우 이화수 임 영 호 이 한 성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재 희 현 희 정 두 언 전 여 옥 전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진 섭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해 진 주 승 용 주광덕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최경환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진 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35인)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김 기 현 김 동 철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영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김정권 김충조 진 표 정 김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희 철 나성린 문 희 상 박 민 식 남 경 필 박 대 해 박 주 선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진 서 병 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안 경률 신 낙 균 신 성 범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유 진 식 이경 이 명 규 유 옂 재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인 기 이정선 이 주 영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임 해 규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전 여 옥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 경 환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진 하	
반대 의원((18인)		
강 기 갑	곽 정 숙	김 상 희	金先東
강 기 갑 김 성 곤	곽 정 숙 김 영 록	김 상 희 김 춘 진	金 先 東 백 재 현
김성곤	김 영 록	김 춘 진	백 재 현
김 성 곤 성 윤 환	김 영 록 신 학 용	김 춘 진 양 승 조	백 재 현 유 성 엽
김성곤 성윤환 이낙연	김 영 록 신 학 용 이 성 남 홍 희 덕	김 춘 진 양 승 조	백 재 현 유 성 엽
김 성 곤 성 윤 환 이 낙 연 최 종 원	김 영 록 신 학 용 이 성 남 홍 희 덕	김 춘 진 양 승 조	백 재 현 유 성 엽
김 성 곤 성 윤 환 이 낙 연 최 종 원 기권 의원(김 영 록 신 학 용 이 성 남 홍 희 덕 (14인)	김 춘 진양 승조이 정희	백 재 현 유 성 엽 조 영 택
김 성 곤 성 윤 환 이 낙 연 최 종 원 기권 의원(김 영 우	김 영 록 신 학 용 이 성 남 홍 희 덕 (14인) 김 재 균	김 춘 진 양 승 조 이 정 희 김 태 호	백 재 현 유 성 엽 조 영 택 노 영 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김기현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정 권 김 진 표 정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 성 김 희 철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주 선 박 순 자 박 은 수 배 은 희 백 워 우 박 짓 배 영 식 백 재 현 성 윤 환 서 병 수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윤 이 범 래 이병석 이경재 이 낙 연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인기 李玲愛 이 용 섭 이 재 오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철 우 이 하 구 이 진 복 이 차 열 이 한 성 이 화 수 임 영 호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두 언 정 병 국 정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나 성 린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1인)

김 태 환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수 김 성 식 김성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진 표 김 춘 진 김 김 충 환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은 수 박 주 선 박 보 환 박 영 아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짉 서 병 수 성 윤 환 백 재 현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옂 윤 진 식 유 이미경 이 낙연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인기 이 재 오 이 용 섭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한 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성 이화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진 섭 정 영 희 정 장 선 정태근 정희수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주 광 덕 조 해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병국 최 연 희 진 영 최규식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홍 사 덕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반대 의원(2인)

강 기 갑 곽 정 숙

기권 의원(2인)

나 성 린 이 영 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강 승 규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김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진 표 정 김 춘 진 김 태 원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박 민 식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유 환 송광호 송 훈 석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2인)

김 영 선

나성린

신 낙 균

강 창 일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성 동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백 원 우 박 진 배 은 희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워 희 룡 원 회 목 유성엽 유기준 유일호 유정현 유 승 민 유 정 복 유 석 용 유 진 식 이경재 유 옂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한구 임 해 규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장 병 완 장 광 근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전 현 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회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정 해 걸 조 문 환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조 윤 선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회 최병국 진 영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기권 의원(4인)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 승 민 유일호 유정현 유정복 윤 석 용 이명규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여 옥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태 근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주 광 덕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5인) 김 영 우 김용구 김 장 수 나 성 린 이미경

(안홍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0인)

의원 157인, 찬성 의원 152인임)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김동성 김동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조 김 영 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용 김혜 성 김 학 송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김희 철 박 대 해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영 아 박 은 수 박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진 서병수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일 호 워 희 목 유기준 유 승 민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성 남 李玲愛 이 용 섭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철우 이 진 복 이 하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전 여 옥 임 해 규 전 재 희 전 현 희 정병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최 규 식 진 영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한 기 호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기권 의원(6인)

강기갑 김성식 이정희 이한성 주호영 홍희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6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수 김성 곤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혜 김 효 석 김 성 나 성 린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 학 용 안 경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윤 영 이경재 이 명 규 이미경 이 낙 연 이범래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화수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현 희 정 두 언 전 재 희 정병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태 근 정장선 정 해 걸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추 미 애 한 기 호 홍 사 덕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강 기 갑

기권 의원(4인)

김 상 희 김 춘 진 안 민 석 정 진 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56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식 김 성 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장 수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호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상 진 신 건 신 낙 균 신 학 용 안 민 석 신 성 범 안 경 률 안 상 수 아 형 화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 성 엽 유기준 유정현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영 이경재 윤 윤 진 식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이 영 애 이 용 섭 이인기 李玲愛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정희 이 한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화 수 임 영 호 임 동 규 장 광 근 임 해 규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회 정장선 정진섭 정희수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윤 선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최규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홍 희 덕

기권 의원(5인)

곽 정 숙 김 영 환 김 춘 진 김성수 유 원 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권 경 석 권성동 김무성 권 영 진 김동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근 혜 문 학 진 박 병 석 박 보 환 박 기 춘 박 민 식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백 재 현 성 윤 환 송 훈 석 신 검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회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성 엽 유정복 윤 석 용 유정현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정선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한구 이한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화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한 기 호 한 선 교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재 형 허 홍 희 덕 황 영 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기권 의원(1인)

곽 정 숙

찬성 의원(15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무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관 김성수 김성식 김 영 록 김 영 우 김성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김 충 환

김 학 송

남 경 필

박 근 혜

박 보 환

박 은 수

배 영 식

서 병 수

신 상 진

안 민 석

아 효 대

원 유 철

유일호

윤 석 용

이 낙 연

이병석

이 애 주

이정선

이 진 복

이 화 수

장 광 근

정 두 언

정 장 선

조 경 태

조 윤 선

조 해 진

진 수 희

최병국

한 기 호

홍 사 덕

황 영 철

김 태 원

김혜성

노 영 민

박 기 춘

박 순 자

박 종 근

배 은 희

성 윤 환

신 성 범

안 상 수

양 승 조

원 희 목

유 재 중

이명규

이 사 철

李玲愛

이정희

이 철 우

임 동 규

전 여 옥

정 병 국

정 진 섭

조 문 환

조 전 혁

주 광 덕

최 영 희

한 선 교

홍일 표

영

진

영

유

김 태호

김 효 석

문 학 진

박 민 식

박 영 아

박 주 선

백 원 우

송 훈 석

신 학 용

안 형 환

여 상 규

유 기 준

유 정 복

윤 진 식

이미경

이석현

이 용 섭

이종구

이 한 구

임 영 호

전 재 희

정 수 성

정태근

조 영 택

조 정 식

주 승 용

최경환

최인기

홍 재 형

허

천

김 태 환

김 희 철

문 희 상

박 병 석

박 우 순

백 재 현

안 경률

안 홍 준

오 제 세

유 성 엽

유정현

이경재

이 범 래

이 성 남

이인기

이 주 영

이 한 성

임 해 규

전 현 희

정 영 희

정희수

조 원 진

조 진 형

진 성 호

최 규 식

최종원

현기환

홍 희 덕

진

건

박

신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진 김동철 권 성 동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 영 환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확

김 희 철

문 희 상

박 민 식

박 영 아

박 주 선

백 원 우

안 경률

안 효 대

워 유 철

유 일 호

윤 석 용

이 낙연

이병석

이 애 주

이인기

이 주 영

이 한 성

임 해 규

전 현 희

정

영 희

건

신

김 태호

김 효 석

문 학 진

박 대 해

박 순 자

박 종 근

배 은 희

송 훈 석

신 학용

안 홍 준

오 제 세

유성엽

유 정 현

이경재

이 범 래

이성남

이 용 섭

이 종 구

이 한 구

임 영 호

전 재 희

정 수 성

김 태 원

김혜성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보 환

박 은 수

배 영 식

서 병 수

신 성 범

안 상 수

여 상 규

유 기 준

유 정 복

윤 진 식

이미경

이석혀

이 영 애

이정희

이 철 우

임동규

전 여 옥

정 병 국

김 학 송

남 경 필

박 근 혜

박 병 석

박 우 순

백 재 현

신 상 진

안 민 석

양 승 조

워 희 목

유 재 중

이 명 규

이 사 철

李玲愛

이정선

이진복

이화수

장 광 근 정 두 언

정 장 선

영

유

진

박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남 경 필 김 희 철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문 희 상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 학 용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워 유 철 워 희 목 오 제 세 유기준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성 엽 유 정 복 유정현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인기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철 우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수성 정 영 희 정장선 정 진 섭 정태근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전 혁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짉 최경환 최병국 최 연 희 최규식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정 진 섭 정 태 근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성호 짓 옂 최 연 희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천 홍 사 덕 허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김동성 김동철 권 영 진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영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동철 김 동 성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충 환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워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문 희 상 노 영 민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진 식 유 영 이명규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섭 이인기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최병국 진 최규식 영 최연회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홍 사 덕 홍 재 형 현 기 환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정 태 근

기권 의원(1인)

이진복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흥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정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김 희 철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문 희 상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순 자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검 신 상 진 신 학 용 신 성 범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인기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한 성 이화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재 희 정 두 언 전 현 회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조 전 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병국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현기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반대 의원(1인)

김 춘 진

황 영 철

기권 의원(3인)

김동성 김 형 오 이 한 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천

권성동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성 태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장 수 김 재 균 정 김 김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희철 김 혜 성 김 효 석 남 경 필 문 학 진 문 희 상 노 영 민 박 기 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배 은 희 백 원 우 박 진 배 영 식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학 용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양 승 조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李玲愛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한 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화 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혀 희 정 두 언 병 국 정 정 수 성 정 영 정의화 회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조 전 혁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최경환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홍 사 덕 허 첡 현 기 환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백 재 형

기권 의원(2인)

김 형 오 유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고 승 덕 권경석 권 영 진 김 동 철 권성동 김 동 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성 조 김 김 성 태 김 영 록 김 영 선 영 우 김용구 김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재 균 김충조 김 김 정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문 학 진 문 희 상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주 선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짉 백 재 현 서병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안 경률 안 민 석 신 학 용 안 규 백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일호 유 재 중 유정현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윤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인기 이정선 이정희 이 주 영 이 철 우 이 종 구 이 진 복 이 한 구 이한성 임동규 이 화 수 임 해 규 장 광 근 병 완 전 재 희 장 정 병 국 정 수 성 전 현 희 정 영 희 정 태 근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희수 정 하 균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주 승용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짓 영 최경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최종 워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일 표 황 영 철 홍 사 덕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정 두 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곽 정 숙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김동성 김 동 철 짓 김 무 성 상 희 金先東 김 성 곤 김 김성수 김 성 김성조 김 성 식 태 영 록 김 영 김 영 우 김용구 김 선 김 용 태 유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 재 균 김 정 김 춘 진 김 충 조 태 원 김 학 송 태 호 김 태 환 김 김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문 학 진 문 희 상 노 영 민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은 수 박 종 근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재 혅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신 상 진 신 성 범 건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제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영 이 낙연 윤 진 식 이경 재 이 군 현 이명규 이미 이 범 이 병 석 경 래 이 사 철 이석 이 애 주 쳙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이 인 기 섭 이정선 이정 이종구 이 주 영 회 이진복 철 우 이 한 구 이 화 수 \circ 임동규 해 장 광 근 장 병 임 7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의 화 수 영 정 장 선 정 성 정 회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해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ठ् 진 수 희 진 영 최경 환 최 규 식 병 국 최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워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흥 길 권 경 석 고 승 덕 곽 정 숙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김 동 성 짓 김 동 김 무 성 상 희 金先東 철 김 김성 곤 김성수 김 성 식 김성조 김 성 김 영 록 영 우 김용구 태 김 김 용 태 김 유 정 을 김 장 수 김 동 김 재 균 김 정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김 태호 김 학 송 원 김 태 환 김혜성 김 김 형 오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문 학 진 남 경 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박 보 환 박 영 아 석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재 혅 서병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신 상 신 성 범 건 진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현 이 군 현 이 낙연 이경 재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화 수 임 동 규 0] 임 해 규 장 광 근 병 완 전 재 희 장 정 두 언 전 현 희 병 국 정 수 성 정 정 의 화 정 영 회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해 정 희 수 정 걸 조 문 환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해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최종 워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2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권 경 석 권 성 숙 동 권 영 세 권 영 김 동 성 김 동 진 철 김 무 성 상 희 金先東 성 곤 김 김 김성수 성 김성조 김 성 김 식 태 김 영 록 영 김 영 우 김용구 김 선 김 용 태 유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 재 균 김 정 김 춘 진 김 충 조 태 원 김 학 송 태 호 김 태 환 김 김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문 학 진 문 희 상 노 영 민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은 수 박 종 근 박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재 혅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신 상 진 신 성 범 건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제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명 규 이 군 현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 이 애 주 李玲愛 남 영 애 이용 이정 이 섭 이 인 기 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0] 철 우 한 구 이 화 수 임동 \circ 규 임 해 규 광 장 병 전 재 장 근 완 회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수 성 영 희 의 정 정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문 환 조 경 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영 종 원 회 최 인 기 최 추 미 애 한 기 ठ्रे 한 선 교 허 첡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원 희 룡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권 경 석 숙 권 성 권 영 세 영 김 동 성 동 권 진 김 동 김 무 성 김 상 희 철 金先東 김 성 성 수 성 성 조 곤 김 김 식 김 김성 태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 용 태 유 정 김 을 동 김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춘 진 정 김 태 원 김 태 환 김 충 조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희 철 경 필 문 학 진 남 영 민 노 박 근 혜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배 은 희 진 배 영 식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윤 석 용 윤 진 식 현 윤 영 이경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재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병 0 석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0 영 애 이 용 섭 인 기 이정선 0] 이정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회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 임 해 규 광 병 완 규 장 근 장 전 재 희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전 영 희 정 장 선 정 수 성 정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호영 조 해 진 진 성 호 경 진 수 회 진 영 최 화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 회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원 희 룡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김동성 권 영 세 권 영 진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긲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창 수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남 경 필 김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기 춘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짉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송 훈 석 성 윤 환 손 범 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일호 유 기 준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 이 인 기 이정선 이정 섭 회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 진 섭 정희수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조 워 진 택 조 해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병국 짓 옂 최경환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추 미 애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희덕 황영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성 식 김 김 성 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창 수 김 춘 진 충 조 김 충 환 김 김 태호 김 태 원 태 화 김 학 송 김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건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환 여 상 규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희 룡 유기준 워 희 목 유 일 호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인기 이정희 이정 선 이 주 영 이종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현 희 정병국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희 수 조경태 정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워 진 조 유 선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짉 영 최 경 회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한 기 호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권영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7인, 기권 의원 없음)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권경석 고 흥 길 권 영 세 김동성 김동철 권 영 진 김무성 김성수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 재 균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창 수 김 춘 진 김충조 김 정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병 석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배 영 식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검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화 아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유 이경재 이낙연 이 명 규 이 군 현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용섭 이인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진 복 임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세 균 정수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회 진 성 호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영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기권 의원(1인)

신 상 진

(조전혁 의원 착오로 김선동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57인, 기권 의원 1인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1인)

강석호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동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수 김성 곤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용구 김 소 남 김 영 환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충환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혜성 남 경 필 김 희 철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짓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신 상 진 건 신 성 범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윤 석 용 윤 진 식 윤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종구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 주 영 이진복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헍 전 재 희 정 두 언 병 국 전 현 희 정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장선 정 의 화 정태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해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병국 최경환 최경희 최규식 최 연 희 최영희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기권 의원(4인)

강기갑 나성린 이명규 홍희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영 세 권 영 진 김무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환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배 은 희 진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신 상 진 건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홍 준 여 상 규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윤 진 식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정 두 언 정 병 국 전 재 희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종 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9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동성 김동철 권 영 세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태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록 영 환 김용구 김 김 을 동 김용 태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정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혜성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백 원 우 배 은 희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송 광 호 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건 안 경률 아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일호 윤 석 용 윤 진 식 윤 이경재 이 군 현 영 이 낙 연 이명규 이 범 래 이미경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정선 이 주 영 이 인 기 이 종 구 이진복 이 하 구 이 화 수 이 한 성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두 언 병 국 전 현 희 정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의 화 정 태 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최경환 진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강승규 조전혁

○빛공해방지법안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홍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용 태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춘 진 김충환 김 태 원 김충조 김 학 송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형 오 김혜성 나 성 린 남 경 김 희 철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일 호 유기준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군 현 윤 진 식 이 낙 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혀 이 성 남 이애주 이 용 섭 李玲愛 이 영 애 이 주 영 이인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현 희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 영 희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신 학 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영 세 권성동 김동성 권 영 진 김무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 을 동 김 장 수 김용구 김용 태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충 조 충 환 김 춘 진 김 김 태 워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백 워 우 박 주 선 박 짓 배 은 희 서병수 백 재 현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신 상 진 건 신 성 범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워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윤 이 낙 연 이미경 이경재 이명규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 섭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영 호 임 해 규 임 장 광 근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창 수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호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혜성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노 영 민 박 대 해 박 병 석 문 희 상 박기춘 박 우 순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종 근 짓 박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유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학 용 신 신 상 진 신 성 범 건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목 원 유 철 유기준 유일호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낙연 이경재 이 군 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애 주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한구 이한성 이 화 수 임동규 장 병 완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병 헑 전 재 희 전 현 회 정 병 국 정 두 언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조경태 정 하 균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해 진 주 광 덕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종원 추 미 애 최 영 희 최인기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현 기 환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강 승 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 석 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세 권성동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 성 조 김성 태 김 영 록 김 영 환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창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백 원 우 박 진 배 은 희 백 재 현 서병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상 진 신 건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신 성 범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일호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종구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화 수 이 한 성 임 영 호 임 해 규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두 언 병 국 전 현 희 정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진 섭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홍 사 덕 홍 영 표 천 현 기 환 홍 희 덕 홍 일 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김동 성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용 태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희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영 아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종 근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학 용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일 호 원 희 목 유기준 윤 석 용 유 유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옂 이 낙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인 기 李玲愛 이 영 애 이 주 영 이정선 이정 이 종 구 회 이진복 이한구 이 한 성 이화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장세 환 전 병 헌 전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원 진 조 문 환 조 윤 선 조 진 형 주 광 덕 조 전 혁 조 해 진 주호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희 최 영 희 최종원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현 기 환 홍 희 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9인)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영 세 권 영 진 권 성 동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태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영 록 김 영 환 김 을 동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충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문 희 상 김희철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박 진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건 신 신 상 진 신 성 범 심 대 평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회 룡 원 회 목 유일호 유 기 준 윤 석 용 윤 영 이 낙 연 유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혀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한 구 이한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혀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전 혁 조 문 환 조 윤 선 주 광 덕 주 승용 조 진 형 조 해 진 주호영 최경환 진 성 호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현 기 환 한기호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반대 의원(2인)

이정희 홍희덕

(안홍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9인, 기권 의원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흥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동 성 김무성 김동철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남 경 필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우 순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규 백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원 희 룡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애 주 이석현 이성남 李玲愛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회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병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장선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해 걸 조 문 환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유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조 해 진 진 수 희 최경환 진 성 호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종원 추 미 애 최 인 기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홍 일 표 기권 의원(1인)

박 순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권 성 동 고 흥 길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식 김성수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록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 재 균 김용 태 김 장 수 김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정 김충환 김 태 워 김 태 호 김 태 화 김 형 오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백 원 우 진 백 재 현 서병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건 신 상 진 신 신 학용 심 대 평 안 경 률 신 성 범 아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 일 호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전 혁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조 해 진 주 호 영 진성호 최경환 진 옂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최규식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현 기 환 한 선 교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기권 의원(4인) 강 봉 균 권경석 남 경 필 배 은 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강 석 호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충조 김 충 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문 희 상 박 기 춘 노 영 민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회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검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워 유 철 워 희 룡 오 제 세 원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인 기 이 정 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한 구 이한성 임 해 규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 수 성 영 희 정의화 정세 균 정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워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해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최경희 진 최경환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종 원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남 경 필

○자녀돌봄지원법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세 권성동 김 동 성 권 영 진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식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환 김용구 김 영 선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은 희 박 종 근 박 진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건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아 홍 준 여 상 규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일호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인기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한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세 환 임 해 규 전 병 헌 정 두 언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태근 정 하 균 정 장 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해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ठे 진 수 회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홍 사 덕 홍 영 표 허 천 현 기 환 홍일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최 영 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영 환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희 철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훈 석 신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용 건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병 석 이경재 이 낙 연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한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장 광 근 전 병 헌 임 해 규 장세 환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전 재 희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태근 정 장 선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규 식 최종워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홍 사 덕 한 선 교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김충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김충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51인, 찬성 의원 151인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명 순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용 태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재 균 김 정 김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박 보 환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백 재 현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용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워 희 목 여 상 규 워 희 룡 유 기 준 유일호 윤 석 용 윤 영 이 낙 연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성남 이애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재 희 장세 환 전 병 헌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해 걸 조 경 정 하 균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첡 혀 기 화 홍 사 덕 홍 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기권 의원(1인)

조 진 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승 규 강 창 일 강 석 호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 소 남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충조 김 충 환 김 정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송 광 호 손 범 규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건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목 워 희 룡 유기준 유 일 호 유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애 주 이 영 애 이성남 李玲愛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두 언 전 현 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조 경 태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윤 선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최경환 진 성 호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혀 기 화 홍 희 덕 홍 사 덕 홍일 표 홍 영 표

기권 의원(1인)

배 은 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강석호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영 세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장 수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김충조 김 충 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주 선 박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 재 현 서병수 서 종 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안 민 석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원 회 목 유일호 유 기 준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재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인기 이인제 이정희 이정선 이 종 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한 성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정 두 언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병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성호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한 기 호 한 선 교 현 기 환 홍 사 덕 허 천 홍 희 덕 홍 영 표 홍일 표 반대 의원(2인)

고 흥 길 손 범 규

기권 의원(8인)

나성린 성 윤 환 윤 영 이 한 구 이 화 수 정 해 걸 최 규 식 추 미 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흥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진 표 정 김 태 원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박 기 춘 남 경 필 노 영 민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검 신 성 범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워 희 룡 워 희 목 유 일 호 유기준 유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애 주 이 사 철 李玲愛 이 영 애 이인기 이정선 이 인 제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의 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워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윤 선 조 정 식 주 광 덕 주 호 영 조 해 진 주 승용 진 수 희 영 최경화 진 성 호 진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현 기 환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홍 영 표 홍 사 덕 홍 일 표 반대 의원(2인)

강 기 갑 홍 희 덕

기권 의원(4인)

곽 정 숙 임영호 성 유 화 이 한 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환 김 영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재 균 김 정 김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박 기 춘 김 희 철 노 영 민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백 재 현 성 윤 환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워 희 룡 유기준 유 일 호 유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인기 이 인 제 이정선 이 주 영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병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원 진 조 문 환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형 조 전 혁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회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첡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홍 일 표 기권 의원(2인)

김성조 남 경 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 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8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영 환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효 석 김혜성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안 규 백 아 민 석 아 형 환 아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 일 호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유 옂 유 진 식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인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한성 임동규 이 화 수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혀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장 선 정 태 근 정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원 진 주 승 용 조 진 형 조 해 진 주광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종 워 최인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반대 의원(3인)

강 기 갑 이정희 홍 희 덕

기권 의원(2인)

김 장 수 임 해 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MINUSTAH)」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식 김성수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정 김 태 호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백 원 우 박 진 배 은 희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송광호 손 범 규 송 훈 석 신 건 신 학 용 아 규 백 신 성 범 심 대 평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인 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한 구 이 한 성 임 영 호 임 해 규 이화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조경태 조 원 진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정 식 조 진 형 조 윤 선 조 전 혁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최경환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추 미 애 최영희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허 천 홍일 표 현기환 홍 사 덕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유 성 엽

기권 의원(1인)

찬성 의원(145인)

원 혜 영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14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박 기 춘 노 영 민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종 근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서병수 서 종 표 송 훈 석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신 학 용 신 검 신 낙 균 신 성 범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윤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명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종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두 언 전 현 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성 호 최경화 최경희 최 규 식 짉 옂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현기환 허 천 홍 사 덕 홍 일 표 황 영 철

반대 의원(3인)

강창일 김재윤 최영희

기권 의원(1인)

백 재 현

(김재윤 의원 착오로 이윤석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49인, 반대 의원 3인임)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김희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워 우 박 짓 서병수 성 윤 환 백 재 현 서 종 표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일 호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낙연 이 사 철 이애주 이 영 애 李玲愛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 종 구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조경태 조 문 환 정 해 걸 조 워 진 조 정 식 조 유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조 해 진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허 원 제 한 기 호 한 선 교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일 표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유 성 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무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재 현 박 진 백 원 우 서 병 수 성 유 화 손 범 규 서종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학용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애 주 이 사 철 李玲愛 이 영 애 이인제 이종구 이 인 기 이정선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하 구 이 화 수 임동규 임 영 호 이 한 성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주광덕 주 승용 조 진 형 조 해 진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영 희 최종원 최 연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현기환 허 천 홍 사 덕 홍 일 표 황 영 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동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식 김 영 록 김성수 김 소 남 김 영 환 김 영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정 김 태호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남 경 필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병수 서 종 표 성윤환 손 범 규 송 훈 석 송 광 호 신 건 신 낙 균 신 학 용 심 대 평 아 규 백 신 성 범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효 대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군 현 이 낙연 이명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종혁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병 헌 정 두 언 전 전 재 회 전 현 희 정수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최경화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영 희 최 종 원 최 연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사 덕 허 천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조 해 진

○출석 의원(268인)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기현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 태 김 영 환 김옥이 김용구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창 수 김충환 김 태 원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문 학 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숙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박희 태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영 수 신 낙 균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승 민 유 원 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병 석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사 철 이 애 주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인제 이 재 오 이정 이정현 선 이 주 영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화수 이회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미경 정 범 구 정 정 병 국 정 세 균 정양석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하 균 정 해 걸 정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최 규 식 최 연 희 최인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영 표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192인)

장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 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수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성태 김 세 영 우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정 김 충 조 김 충 환 김 권 김 진 애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희 철 김 혜 성 김 호 연 나성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병 석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박 준 선 진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성 윤 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심 재 철 안 경 률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이두아 이경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헌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제 이정선 이정 이정희 이종구 혅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화수 이 한 성 이 회 창 이혜훈 임동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옥 임 정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워 진 혁 주 광 덕 조 전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일 표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속개 시 재석 의원(167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승 규 강석호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영 권 택 기 권 세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성 곤 김성수 김성조 성 태 김성식 김 김세연 김 영 영 김 영 우 김 소 남 록 김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영 진 김 장 수 김 정 훈 김 정 김 정 권 충 조 김 태 원 김 진 표 김 춘 진 김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호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노 철 래 박 병 석 박 대 해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백 재 현 서종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건 신 학 용 신 낙 균 신 영 수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재 중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현 윤 석 용 윤 상 일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두아 이 석 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성 헌 李玲愛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정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선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해 규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임 장 병 전 여 옥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범 구 세 균 정 수 성 정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해 걸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승 용 조 해 진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환 짉 옂 최 규 성 최 연 희 최병국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청가 의원(8인)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우 남 송 영 선

이용경 이재선	이 종 걸	0]	해 봉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윤	원	중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한	공	식
○출석 국무위원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박	재	완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환
법 무 부 장 관	권	재	진
국 방 부 장 관	김	관	진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지식경제부장관	홍	석	우
보건복지부장관	임	채	민
환 경 부 장 관	유	영	숙
고용노동부장관	0	채	필
여성가족부장관	김	금	래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권	도	엽
○출석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	남	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곽	영	진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0	상	길
공 정 거 래 위 원 장	김	동	수
방송통신위원장	최	시	중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권영길	강기갑	통합진보당	2011. 12. 23

○교섭단체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민주당	민주통합당	2011. 12. 23

○의안 제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2 류근찬·권선택·변웅전·정범구· 김영록·강창일·임영호·이춘석·변재일· 이진삼 의원 발의)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2 정부 제출)

1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 12. 23 정부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3 박민식·이진복·김세연·김성회· 이한성·신성범·최병국·권영진·원희룡· 남경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6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 에서 금융감독당국등의 부실·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1. 12. 23 우제창·강성종·김동철·박병석· 박선숙·신건·유선호·유성엽·유원일· 이종걸·조영택 의원 발의)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 불승인 촉구 결의안

(2011. 12. 23 조영택·박병석·김동철·이종걸· 유선호·유성엽·신건·유원일·강성종· 우제창·박선숙·이성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3 정두언·김세연·김정권·정태근· 김용태·임해규·서상기·김선동·김성곤· 박보환·남경필 의원 발의)

12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1. 12. 23 김동철·조영택·장병완·문희상· 신낙균·강기정·원혜영·강창일·김영진· 홍영표·이성남 의원 발의)

12월 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3 유승민·김진표·김동철·조영택· 주성영·서상기·홍사덕·이해봉·배영식· 조원진·이한구·김옥이·김선동·남경필· 김학송·송영선·김동성·정미경·김영진· 강기정·이용섭·장병완·박주선·이찬열· 김재균 의원 발의)

12월 2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3 이상민·안민석·권영길·유성엽· 임영호·김영진·김창수·권선택·류근찬· 김용구 의원 발의) 12월 2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6 강석호·김성수·정해결·신성범·성윤환·황영철·이영애·이사철·이주영·김학용·유기준·안효대·한기호 의원 발의)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6 유성엽·황영철·김용구·김성수·김효석·권영길·강기갑·신건·오제세· 김상희 의원 발의)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6 서상기·정두언·이종혁·원희목· 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 임해규 의원 발의)

12월 2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6 권선택·변웅전·김낙성·임영호·김창수·김용구·류근찬·심대평·이회창·이진삼·이상민·이명수·이인제·이재선 의원발의)

12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6 유승민·김진표·김동철·조영택· 주성영·서상기·홍사덕·이해봉·배영식· 조원진·이한구·김옥이·김선동·남경필· 김학송·송영선·김동성·정미경·김영진· 강기정·이용섭·장병완·박주선·이찬열· 김재균 의원 발의)

12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7 배은희·김소남·서상기·정진섭· 박보환·김학용·김장수·권영진·정병국· 정갑윤·정두언·이정선 의원 발의)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2011. 12. 27 정부 제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7 정부 제출)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히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원회목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7 원희목·김소남·이용희·손숙미· 유재중·안홍준·김춘진·윤석용·이낙연· 권경석·이영애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7 김혜성·김세연·김성회·정갑윤· 변웅전·강창일·노철래·김정·안홍준· 최연희·윤상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1. 12.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1. 12. 27 정부 제출)

1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8 정부 제출)

12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8 정부 제출)

12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1. 12. 28 정무위원장 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8 김영선·심재철·김용태·권택기·정태근·정두언·한기호·장광근·이용섭· 신건·김동철·이사철·임영호·이진복· 현기환 의원 발의)

12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정무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국방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8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9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 12. 29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8 정부 제출)12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사무총장(윤원중) 임명승인안

(2011. 12. 28 의장 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8 김창수·임영호·변웅전·이진삼· 권선택·이명수·이재선·이인제·김용구· 이상민 의원 발의)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7건 2011. 12. 28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11. 12. 2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1. 12. 28 정무위원장 제출)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1. 12. 28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대안)

(2011. 12. 28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1. 12. 2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 2011. 12.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11. 12. 28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상 5건 2011. 12. 28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 2011. 12. 2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1. 12. 2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 2011, 12, 28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1. 12. 28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8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 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이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 2011. 12. 28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 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9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27 정부 제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2 우윤근·최철국·김성곤·박영선· 박우순 · 이춘석 · 주승용 · 전현희 · 김상희 · 박은수·박준선 의원 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 박민식·김성태·남경필·박준선· 신성범·원희룡·이낙연·이진복·이한성· 장윤석·전현희 의원 발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30 정부 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12. 30 정부 제출)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30 정부 제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3 정부 제출)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25 장윤석·유정현·이명수·이상권· 주성영·주광덕·정해결·안홍준·박민식· 정갑윤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 25 박은수·박선영·최철국·최영희· 우윤근·김춘진·김재윤·전혜숙·이인기· 이한성·박영선·권성동·송영길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25 장윤석·유정현·이명수·이상권· 주성영·주광덕·정해걸·안홍준·박민식· 정갑윤 의원 발의)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27 정부 제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30 정부 제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9. 5. 25 황우여·김춘진·손범규·김태원· 이한성·안상수·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김정권·우제창· 신지호·전여옥·이경재·이두아·김동성· 이정선·정몽준·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 발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1. 9. 1 정부 제출)

(이상 10건 수정하여 의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9. 1. 16 손범규·이성헌·유기준·조윤선· 김태원·이한성·임동규·김성수·안홍준· 안상수·나성린·박대해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이석현·김재윤·김효석·박선숙· 신건·송민순·신학용·안민석·양승조· 전혜숙·조경태·조배숙·문학진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0. 8. 16 이정선·손범규·정양석·김혜성· 안홍준·이명수·홍영표·황우여·유성엽· 임동규·신상진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0. 8. 6 김을동·송영선·김세연·이명수· 유승민·손범규·고승덕·김성동·이철우· 김효재·홍사덕·한선교 의원 발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9. 13 이정현·이경재·최문순·김옥이· 김세연·김선동·이성남·송훈석·김성수· 조정식 의원 발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9. 17 이주영·정갑윤·나성린·강명순· 권성동·박상은·이화수·강승규·성윤환· 여상규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전현회 의원 대표발의)

(2010. 6. 30 전현희·박민식·이윤석·이춘석· 송훈석·원혜영·주승용·이화수·박기춘· 변웅전·임영호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9. 7 최영희·김상희·박은수·안민석· 양승조·원혜영·이미경·이찬열·이춘석· 장세환·정범구·조배숙·최철국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0. 7. 7 조배숙·김재윤·최규성·김동철· 문학진·신건·김성곤·송민순·장세환· 이종걸·양승조·박주선·전혜숙·김재균· 조영택·정범구·주승용·조정식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9. 16 이정현·이성헌·이학재·김선동· 구상찬·권영진·진영·홍정욱·이경재· 최문순·김옥이·김세연·송민순·이성남· 송훈석·정미경·한선교·정갑윤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0 안효대·임동규·박대해·손범규· 박준선·이은재·장제원·김영우·김혜성· 조해진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0. 3. 26 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 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 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10. 7. 6 권영세·이사철·강길부·장광근·이학재·유승민·김금래·고승덕·김우남·김장수·김성수·이윤성·강성천·김정권·안형환·이한성·강용석·배은희·이성헌·유석용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10. 7. 8 권영세·이사철·강길부·장광근· 유승민·고승덕·김우남·김장수·김성수· 강성천·김정권·안형환·이한성·강용석· 박준선·김충환·배은희·이성헌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09. 5. 6 김재균·장세환·강기정·김동철· 문희상·송민순·문학진·최문순·주승용· 양승조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9. 9. 28 변재일·양승조·김효석·이용섭· 노영민·강기갑·박은수·최철국·성윤환· 박상돈·오제세·강봉균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2 공성진·한선교·이해봉·신상진· 김충환·강석호·김을동·김동성·김성회· 현경병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2 정부 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1 최경희·이윤성·원희룡·김소남· 송훈석·이종구·윤석용·이석현·성윤환· 김무성 의원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9. 12. 4 김우남·김영록·강창일·최규성· 강기정·김을동·원희룡·김동철·조경태· 김재윤 의원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10. 9. 13 박준선·김금래·손범규·안형환· 이사철·이윤성·이정선·정해걸·홍준표· 황영철 의원 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8 정부 제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9 김학재·박지원·주성영·이한성· 박은수·이상권·김성동·이춘석·조배숙· 우윤근·추미애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 김학송·김무성·유승민·김정권· 김영우·김장수·김옥이·조진래·현경병· 조문환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8. 3 이혜훈·김을동·송영선·안효대·

김금래·이학재·성윤환·한선교·고승덕· 장세환·박영아 의원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4. 22 강창일·신학용·이윤석·조영택· 주승용·박은수·조정식·최규성·오제세· 강기정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1 정부 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0. 8. 17 김세연·임동규·유승민·홍정욱· 박대해·유기준·이철우·김영진·우제창· 김금래·오제세·김을동·김부겸·김재윤· 최문순·신낙균·강기갑·정갑윤·최재성· 이용섭·조승수·유재중·유원일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23 임동규·이한성·이명수·김태원· 안효대·윤상일·김소남·진영·김정권· 이인기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3. 29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정권·김창수·류근찬·변웅전·이명수·이용희·이재선·이진삼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18 정부 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 밤의)

(2011. 8. 29 정수성·강명순·한기호·현기환· 백성운·이종혁·한선교·유성엽·임동규· 정갑윤 의원 발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9. 13 이정현·이경재·최문순·김옥이· 김세연·김선동·이성남·송훈석·김성수· 조정식 의원 발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9. 17 이주영·정갑윤·나성린·강명순· 권성동·박상은·이화수·강승규·성윤환· 여상규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2008. 6. 12 현기환・김무성・이혜훈・강성천・

김태환·최연희·송광호·진영·유재중·한선교· 이윤성·서상기·김을동·정갑윤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홍일표·이윤성·이학재·이정선· 이상권·윤영·이경재·조진형·이은재· 이병석·조윤선·신성범 의원 발의)

(이상 3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6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9. 6. 15 신상진·김우남·유성엽·김성태· 정병국·정해걸·김종률·이화수·황진하· 이시종·우제창·박보환·임영호·홍일표· 강성천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9 이명수·정희수·김을동·김용구·김창수·임영호·정의화·이재선·이상민· 권선택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6. 2 박상돈·김창수·홍재형·김성곤·임영호·박은수·이인기·노영민·주승용·김성순·심대평·김용구·이명수·박선영·이진삼·이상민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9. 4. 15 정미경·김태원·송민순·안상수· 안홍준·안효대·유성엽·이정선·이한성· 임동규·조윤선·황우여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9. 4. 1 이종걸·강창일·홍재영·우윤근· 이석현·최문순·장세환·전병헌·장광근· 서갑원·양승조·김재윤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8. 9. 18 이상민·변웅전·김용구·김창수· 이진삼·김낙성·이재선·권선택·임영호· 김재윤·박상돈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8. 7. 10 최규식·강창일·김춘진·김희철· 이한성 · 배영식 · 유기준 · 김종률 · 안민석 · 박기춘 · 신낙균 · 유정복 · 오제세 · 송영선 · 이혜훈 · 최문순 · 전현희 · 우제창 · 이진삼 · 김충조·김동철·김재균·안상수·안규백· 문희상 · 이성헌 · 손범규 · 백성운 · 정하균 · 박종희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최재성·강창일·최영희· 박은수 · 백재현 · 최인기 · 김영록 · 조정식 · 강기정·유성엽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고승덕·송영선·유원일·현경병· 송민순 · 정의화 · 이한성 · 정동영 · 이해봉 · 이명수·조경태·황우여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1. 3. 18 여상규 · 이경재 · 이종혁 · 서상기 · 김세연・유기준・한기호・정의화・김선동・ 황영철·강석호·황우여 의원 발의)

상조업법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8. 7. 24 권경석·구본철·강성천·허범도· 이명규 · 신성범 · 정갑윤 · 김정권 · 안상수 · 김재경 · 정두언 · 신상진 · 원희룡 · 이한구 · 이인기·김정훈·안경률·윤영 의원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4. 19 박은수·조영택·전현희·최영희· 주승용 · 김상희 · 백원우 · 강창일 · 곽정숙 · 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12건 폐기하기로 의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

(2011. 3. 10 김호연·박민식·박준선·서병수· 유기준 · 이명규 · 이사철 · 이진복 · 임동규 · 주광덕·현기환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 7. 18 정부 제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 정부 제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

(2011. 3. 10 김호연·박민식·박준선·서병수· 유기준・이명규・이사철・이진복・임동규・ 주광덕·현기환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8. 5 박상돈·김성순·김용구·김재윤· 김정권 · 김창수 · 박영선 · 신학용 · 양승조 · 우제창・이명수・이상민・이성헌・이시종・ 임영호·주승용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 7. 14 김동철·김상희·홍재형·김충조· 유성엽 · 안민석 · 송영길 · 우제창 · 박주선 · 강기정·김영진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6 정부 제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6 홍영표·우제창·조경태·이석현· 송영길·문학진·전혜숙·유원일·최규성· 전병헌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조원진·강성천·박순자·박준선· 유재중 · 이사철 · 이명규 · 이인기 · 정해걸 · 정희수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8. 10. 16 김영선·김태원·유성엽·백성운· 고승덕 · 안상수 · 정영희 · 황우여 · 구본철 · 윤상현·김충환·황영철·김성수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2008. 10. 2 조진래・서상기・장제원・유기준・ 안상수 · 김희철 · 한선교 · 신성범 · 유성엽 · 강석호 · 정영희 · 권영진 · 배영식 · 이해봉 · 황영철 · 김충환 · 나성린 · 양정례 · 박준선 · 황우여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08. 12. 4 황영철·권영진·김태원·안상 수·유기준·유성엽·임동규·이정현·이한 성·주광덕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1 정부 제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8 송훈석·김성태·김영진·김우남· 김진애·박기춘·양승조·유성엽·이시종· 이찬열·이한성·홍희덕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9 오제세·전병헌·김영록·정장선· 김성곤·김춘진·안민석·김금래·박주선· 김호연·김용구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1. 3. 29 정옥임·안홍준·이정선·황우여· 이종혁·이화수·이해봉·김호연·김용구· 최경희·김금래·권영세·임해규·한선교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8. 12. 31 박민식·권영진·김성식·김성태· 김영우·김정훈·이계진·이진복·주광덕· 현기환·황영철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 6. 18 김동철·김우남·양승조·김종률· 박주선·강기정·이종걸·주승용·김영진· 이낙연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6 신학용·김정권·조경태·박기춘· 한선교·안경률·이미경·오제세·송영길· 최규식·이강래·우윤근·변재일·박준선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9 이명수·정희수·김을동·김용구·김창수·임영호·정의화·이재선·이상민· 권선택 의원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 고승덕·배영식·이정선·송민순· 김정·이철우·유기준·권영진·장제원· 나성린·박준선 의원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11. 9. 29 권택기·김충환·김성식·윤석용· 김정권·권영진·김소남·이한성·이사철· 박준선·권성동·김광림·유일호·안상수· 원희목·이병석 의원 발의)

(이상 2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5건 정무위원장 보고

협동조합기본법안(손학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2 손학규・강봉균・강창일・김동철・ 김부겸 · 김상희 · 김성곤 · 김성순 · 김우남 · 김유정 · 김재균 · 김재윤 · 김진애 · 김진표 · 김춘진 · 김충조 · 김학재 · 김효석 · 김희철 · 노영민 · 문학진 · 박기춘 · 박병석 · 박상천 · 박선숙 · 박영선 · 박우순 · 박은수 · 박주선 · 박지원 · 백재현 · 서종표 · 송민순 · 송훈석 · 신건 · 신낙균 · 신학용 · 안규백 · 안민석 · 양승조 · 오제세 · 우제창 · 원혜영 · 유선호 · 우윤근 • 이낙연 • 이석현 • 이성남 • 이용섭 • 이윤석 · 이종걸 · 이찬열 · 이춘석 · 장병완 · 장세환 · 전병헌 · 전현희 · 전혜숙 · 정동영 · 정범구 · 정장선 · 조경태 · 조배숙 · 조영택 · 조정식 · 주승용 · 최규성 · 최규식 · 최영희 · 최인기 · 최종원 · 추미애 · 홍영표 · 홍재형 의원 발의)

협동조합기본법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1. 2 김성식·권영진·주광덕·조진래· 정태근·이두아·김선동·김성수·박민식· 김무성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9 이용섭·김성곤·조영택·신건· 이미경·송민순·양승조·최철국·김영진· 김상희·김진표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7 백재현·김광림·김성곤·김영진·김진표·김태환·박준선·신학용·양승조·오제세·유선호·이강래·정양석·주호영·차명진 의원 발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6 유일호·김장수·김금래·안홍준· 박대해·원희목·정수성·최경희·권영세· 권선택 의원 발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 유일호·강석호·차명진·윤영· 김호연·이상권·이화수·윤상현·유재중· 박영아·성윤환·여상규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MINUSTAH)」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11. 9. 22 정부 제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11. 8. 23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 10. 25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1. 12. 23 김동철·조영택·장병완·문희상· 신낙균·강기정·원혜영·강창일·김영진· 홍영표·이성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故 이청호 경장 추모 및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2011. 12. 13 정옥임·구상찬·진수희·신상진· 권성동·김학송·강성천·박민식·이종구· 김무성·정갑윤·허태열·김성회·신성범· 이진복·허원제·장제원·이종혁·송광호· 강석호·유기준 의원 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

(2011. 12. 14 김동철・박주선・홍영표・원혜영・ 김우남・신낙균・조영택・문희상・金先東・ 최재성・홍재형・김재균 의원 발의)

중국의 대한민국 영해 침범 행위 근절 및 대한 민국 정부의 강경대응 촉구 결의안

(2011. 12. 13 신학용·강창일·홍영표·안규백· 이찬열·박영선·신낙균·이용섭·이석현· 박지원·정세균·장세환·조영택·김재균· 유선호·김성곤·최종원·김춘진·전혜숙· 최규식·정동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0 서종표·김장수·황진하·김성곤· 신학용·심대평·박기춘·김학송·안규백· 송영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방위원장 보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2011. 6. 30 정부 제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9. 7. 10 이인기·안상수·김충환·조원진· 전여옥·김효재·신영수·이계진·이해봉· 유기준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11. 8. 4 백원우·유선호·주승용·조정식· 최재성·장세환·양승조·문학진·박은수· 전현희 의원 발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1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9. 30 임두성·김영우·윤석용·정해결· 안상수·윤두환·이성헌·유정현·손숙미·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8 심재철·김태원·정희수·구본철· 손범규·황영철·임해규·정해걸·강명순· 박종희·이정선·김성태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08. 8. 14 강창일·강기정·박선숙·양승조·

장세환·유선호·최문순·이윤석·박기춘· 김우남·이춘석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11 김춘진·백재현·김영진·안민석· 최재성·이낙연·이용희·이윤석·문학진· 김성곤·김영록·정장선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 발의)

(2010. 3. 4. 송민순·강용석·강운태·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순·김세연·김영진·김영환·김재균·김재윤·김춘진·문학진·박은수·박주선·서종표·송영길·신낙균·안민석·양승조·이석현·이성남·이윤석·이찬열·장세환·전병헌·전혜숙·조경태·조배숙·최문순·최영희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 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1. 2. 15 강창일·이찬열·최규성·추미애· 정갑윤·백재현·강용석·조영택·유성엽· 전병헌·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8. 25 이계진·강기갑·강석호·김성수· 김세연·김영진·김우남·김재윤·김춘진· 박종희·박준선·손범규·유기준·유성엽· 유승민·이광재·이한성·이화수·정병국· 최연희·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19 주광덕·김성식·강석호·이명수· 권영진·김성태·나성린·권택기·고승덕· 남경필·윤석용·정미경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 발의)

(2008. 7. 4 홍장표·이철우·정갑윤·손범규· 송민순·윤상현·김희철·김소남·신영수· 이해봉·송영선·김영선·김종률·홍정욱· 이용경·최인기·정해걸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09. 9. 1 김소남·김정권·이시종·현경병· 박순자·이해봉·홍일표·정옥임·이인기· 이주영·유기준·정해걸·신상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1 이시종·홍재형·유성엽·주승용· 송광호·김성곤·변재일·김종률·우제창· 노영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31 고승덕·유정현·김성동·정의화· 송민순·배영식·박준선·강용석·이사철· 강명순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4. 19 박은수·조영택·전현희·최영희· 주승용·김상희·백원우·강창일·곽정숙· 양승조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 백성운·김태원·임동규·윤상현· 황영철·김성수·이주영·이춘식·이화수· 정병국·신성범·손범규·홍장표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 발의)

(2009. 3. 6 임두성·김무성·서청원·김소남· 진영·최욱철·안상수·이인기·김성수· 강성천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3 김금래·김세연·손숙미·유재중· 원희목·전여옥·정양석·정옥임·정희수· 최경희 의원 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문희상·강성종·김성수·박기춘· 박선숙·서종표·손범규·송민순·신건· 신학용·이해봉·홍재형 의원 발의)

印鑑證明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권선택・김창수・심대평・이상민・ 류근찬・임영호・박선영・이진삼・이재선・ 최영희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09. 8. 3 윤영·노철래·정희수· 장광근·

김무성·이시종·김효재·임두성·안효대· 윤석용 의원 발의)

忠淸北道堤原郡등4個郡의名稱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0 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08. 7. 7 김우남·최규성·송민순·강기정· 김동철·이시종·송훈석·이진삼·전혜숙· 이화수·이계진·김을동·강창일·김재윤· 박기춘·김희철·원희룡·신학용·우윤근· 조경태·이성헌·최인기 의원 발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 이용섭·김재윤·김재균·이성남· 이미경·김동철·양승조·장병완·김성곤· 전혜숙·박은수·최철국·임영호·조정식· 최문순·박선영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2010. 1. 15 정부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2009. 5. 11 이범래·유정현·김태원·권경석· 신지호·이은재·유일호·나성린·이종혁· 박민식 의원 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2. 9 노영민·김재균·김성순·김효석· 이용섭·홍재형·천정배·김창수·김종률· 허범도·이상민·최철국·장광근·임동규· 허천·김태환 의원 발의)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0 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 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 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0 현경병·이사철·정해결·안홍준· 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 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南楊州郡設置와郡管轄區域등變更에관한法律 폐지 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0 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 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 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장표 의원 대표발의)

(2008. 7. 4 홍장표·이철우·정갑윤·손범규· 송민순·윤상현·김희철·김소남·신영수· 이해봉·송영선·박종희·김영선·김종률· 홍정욱·이용경·최인기·정해걸 의원 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8. 10. 31 김정훈·김무성·이명규·신상진· 정병국·안상수·허태열·이종혁·권경석· 장광근·안홍준 의원 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 11 권영세·정옥임·고승덕·조전혁· 박대해·정의화·이경재·김정권·이정선· 이한성·김충환 의원 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09. 7. 16 강승규·고흥길·김금래·김효재· 나경원·안형환·주호영·진성호·최구식· 한선교·허원제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9. 13 유원일·강기갑·곽정숙·권영길· 김성곤·이정희·전혜숙·조승수·최문순· 홍희덕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8 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 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 이정현·박기춘·이성헌·강성천·신영수· 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국·진영· 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09. 2. 25 김상희·김춘진·송영길·양승조· 이시종·최문순·박은수·변재일·강창일· 김영록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16 김태원·공성진·이인기·홍정욱· 이한성·김정권·손범규·김충환·김소남· 안홍준·강창일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0. 6. 18 김우남·김성수·김재윤·박은수·홍재형·김영진·강기정·조경태·서갑원· 강창일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9 최규성·강기정·김영록·김우남· 조영택·유선호·김재윤·박기춘·문학진· 강기갑·노영민·강창일·정범구·이윤석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09. 5. 18 이성헌·안효대·이한성·주성영· 유기준·신성범·김춘진·김정권·손범규· 임두성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9. 3. 5 송영길·임영호·유성엽·김우남·양승조·이학재·박은수·최영희·송민순·전현희·이윤석·이용섭·강기정·박대해·전혜숙·백원우·고승덕·강운태·정장선·신낙균·김유정·강기갑·이정희·홍희덕·김성곤·김재윤·우제창·정세균·원희룡·강창일·권영길·박영선·백재현·김영록·안규백·곽정숙·이낙연·김동철·유원일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9. 4. 15 송영길·홍재형·김우남·김진표·김효석·유성엽·송민순·강기정·최영희·김동철·백재현·양승조·전혜숙·박은수·전현희·백원우·정장선·이윤석·김재윤 의원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9. 10 이명수·임영호·이시종·김정권· 김창수·오제세·김우남·이용희·박상돈· 김영진·김종률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강창일·박영선·최규성·유성엽· 정동영·송민순·장세환·이윤석·김영진· 문학진·신낙균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2. 3 이은재·권영진·이명수·유정현· 권경석·김소남·임동규·강기정·홍정욱· 현경병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9. 7. 1 이병석·이한성·임영호·이인기· 정희수·강석호·김성태·전여옥·장광근· 정병국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4 진수희·김용태·공성진·정태근·
 강명순·정두언·차명진·나성린·이두아· 원희목·이애주·김재경·남경필·임해규· 이군현·김소남·원희룡·박준선·이종구· 안형환·조문환·안효대·김영우·권성동· 김성회·김효재·김금래·임동규·조윤선· 정양석·신영수·이춘식·현경병·김광림· 이진복·이은재·권택기·정옥임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8 김낙성·임영호·최철국·김용구·이상민·박선영·김창수·우윤근·이재선·이명수·유성엽·권선택·손범규·김우남·류근찬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8 김낙성·임영호·최철국·김용구· 이상민·박선영·김창수·우윤근·이재선· 이명수·유성엽·권선택·손범규·김우남· 류근찬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기갑 의원 대표발 의)

(2009. 5. 7 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낙성· 김영진·김우남·박상돈·송훈석·유성엽· 유원일·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09. 4. 2 강성천·김성태·김상희·이정선·신상진·조원진·현기환·김소남·안홍준·정진섭·김성조·이화수·임두성·김재윤·권선택·정미경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 의원 대표발의) (2009. 3. 11 김효재·임영호·유기준·안상수· 유성엽·한선교·박대해·안홍준·안효대· 고승덕·이한성·이해봉·김충환·손범규· 윤석용·김성수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9. 1. 9 최재성·김영진·양승조·김춘진· 안민석·이종걸·김진표·백원우·김동철· 김종률·전현희·안상수·송영길·문학진· 신학용 의원 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9. 19 신영수·배영식·백성운·양정례·

성윤환 · 박종희 · 이해봉 · 이한성 · 홍일표 · 윤석용 · 구본철 · 안상수 · 원유철 · 박민식 · 박보환·김동성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변재일·이종걸·양승조·김종률· 김효석 · 이시종 · 안규백 · 유선호 · 우제창 · 이용섭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8. 7 안상수·양정례·이한성·김효석· 안효대 · 황우여 · 백성운 · 김효재 · 구본철 · 박준선 · 이정선 · 이경재 · 박종희 · 정영희 · 김충조 · 김동성 · 오제세 · 이혜훈 · 나성린 · 김성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8. 7. 7 한선교·이명규·유승민·김무성· 현기환 · 서상기 · 박종근 · 김효재 · 김성회 · 김충환·강성종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 26 박민식·강용석·권영진·서병수· 원희룡 · 유기준 · 이진복 · 주광덕 · 최병국 · 황영철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1. 8. 10 김재경·조진래·이학재·여상규· 김선동 · 김용태 · 박민식 · 김태환 · 이화수 · 김정권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7. 13 최규성·노영민·김우남·백재현· 이찬열 · 장세환 · 유선호 · 박기춘 · 오제세 · 강창일 · 강기정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오제세·정장선·양승조·김성곤· 최종원 · 백원우 · 박영선 · 조영택 · 유성엽 · 변웅전ㆍ최규성ㆍ김효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2. 8 김우남·박은수·유성엽·최규성· 백원우 · 조정식 · 주승용 · 이사철 · 강기정 · 김재윤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발의)

(2011. 4. 19 전병헌 의원 외 85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11. 4. 4 정진섭·이화수·김효재·나성린· 심재철 · 이종구 · 장광근 · 박보환 · 노철래 · 배은희 • 박상은 • 백성운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3. 31 김효석·최규성·박선숙·조영택· 이춘석 · 최재성 · 김우남 · 신낙균 · 김성곤 · 오제세·백재현·강봉균·류근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11. 2. 16 김낙성 · 이명수 · 김용구 · 김창수 · 권선택 · 강용석 · 김소남 · 임영호 · 이상민 · 이재선·류근찬·윤석용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범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0 신성범·박민식·유재중·조진래· 권영진 · 여상규 · 윤석용 · 정해걸 · 황영철 · 김금래·정옥임·김성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2. 8 김우남·박은수·유성엽·최규성· 백원우 · 조정식 · 주승용 · 이사철 · 강기정 · 김재윤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퓨발의)

(2011. 3. 18 이종혁·유성엽·고승덕·김성태· 신상진 · 김소남 · 임동규 · 김세연 · 이진복 · 박민식 · 김태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8 김성조·정갑윤·김태환·강길부· 조원진・조배숙・이철우・정희수・이명규・ 김광림 · 이한성 · 박종근 · 김혜성 · 김정권 · 유승민 · 이용섭 · 조진래 · 유성엽 · 이인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10. 6. 3 조진형·이사철·이경재·손숙미· 김소남 · 정해걸 · 송훈석 · 박희태 · 신지호 · 권경석·이은재·최연희 의원 발의)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18 원유철·김성수·원혜영·정진섭· 손범규 · 신상진 · 박상돈 · 나성린 · 강창일 · 배은희 의원 발의)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08. 9. 1 강창일·김성수·김소남·임두성· 이진삼·김성곤·이윤석·이한성·김성순· 이춘석·양승조·강기정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5 정범구·강기정·전현희·박은수· 최규성·최철국·이찬열·이춘석·주승용· 노철래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2010. 3. 31 장제원·유기준·강명순·신학용· 이성헌·안효대·현기환·정갑윤·원유철· 김세연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3 이주영·임영호·정희수·고승덕· 신영수·윤영·유성엽·안홍준·이낙연· 김정권·이상민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1. 12 안상수·성윤환·이한성·김소남· 변재일·고승덕·원희룡·임동규·허범도· 김정훈·권경석·최병국·진수희·심재철· 김금래·공성진·권택기 의원 발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1. 1. 6 김소남·김성수·유재중·조진래· 이인기·안홍준·손숙미·최경희·김태원· 정갑윤·유정현·이한성·서병수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9. 27 김춘진·이용희·최규성·이강래·

문희상·강기갑·김세연·강기정·김우남· 신건 의원 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김우남·김성수·김재윤·박은수·홍재형·김영진·강기정·조경태·서갑원· 강창일 의원 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09. 8. 20 이춘석·전현희·최철국·박은수·

우윤근·주승용·강창일·김재균·안규백· 박영선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1. 8. 17 김성수・이용희・손범규・이한성・ 유성엽・김소남・노철래・성윤환・신성범・ 이화수・강석호・임동규 의원 발의)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

(2011. 5. 6 김영우·권영진·박상은·이한성· 황진하·주광덕·한선교·김효재·황우여· 최경희 의원 발의)

(이상 85건 폐기하기로 의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1. 8. 24 임영호·변웅전·김창수·이명수· 김낙성·이재선·김용구·권선택·류근찬· 이진삼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9. 30 이명수·이진삼·임영호·권선택· 김을동·김창수·김용구·변웅전·정의화· 이재선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진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 윤진식·김정·강길부·송광호·임동규·진성호·이한성·유정복·성윤환· 윤영 의원 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1. 1. 14 주광덕·권영진·김세연·황영철· 김성태·신성범·정태근·윤석용·김성식· 손범규·황진하·박기춘·김성수·김태원· 김영우·최재성 의원 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1. 8. 4 김태원·박대해·임동규·이한성· 손범규·김호연·유정현·권경석·김정권· 이인기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7. 14 유정현·정두언·조전혁·손범규·김태원·임해규·김세연·이철우·고흥길·배영식·이인기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11. 7. 18 백원우・최재성・문학진・양승조・

이석현·장세환·박은수·조영택·주승용· 김영진·유선호·김충조·최규식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8 임동규·조승수·이한성·박우순· 윤상현·김성수·박대해·김충조·유성엽· 이병석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이경재·안상수·김우남·박상천· 이학재·강기정·김소남·박상은·이윤성· 권택기·홍일표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3 정부 제출)

(이상 11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0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9 장병완·강기정·김영록·양승조· 유선호·이춘석·전혜숙·조영택·조정식· 최문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조윤선·유기준·이한성·정희수·임해규·장윤석·원혜영·조진형·전재희·강승규·신성범·김성수·성윤환·김성동·김태호·정태근·원희목·박준선·조문환·나경원·김을동·최구식·진성호·이철우·

차명진·김효재·허천·김영선·김정권· 김금래·권성동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 한선교·김혜성·이한성·유성엽· 최경희·이인기·강승규·김성태·김효재· 공성진·유승민 의원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 의원 대표발의)

(2009. 9. 16 홍사덕·김무성·김옥이·김을동· 김효재·나성린·박종근·서상기·성윤환· 송훈석·안형환·유승민·윤석용·이명규· 이인기·이해봉·정의화·조원진·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1. 1. 18 정병국·김성동·이춘식·김호연· 김혜성·강길부·최문순·김효재·권영진· 정장선·강승규·이화수·김장수·홍사덕· 안형환·조진래·이군현·권영세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11. 4. 19 박은수·조영택·전현희·최영희· 주승용·김상희·백원우·강창일·곽정숙· 양승조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회 의원 대표발의)

(2011. 9. 5 전재희·진성호·진영·김성동· 허원제·이군현·한선교·홍사덕·정태근· 조진래·손숙미·이병석·나성린 의원 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2011. 5. 12 전재희·강성천·강승규·고흥길· 구상찬 · 권선택 · 김광림 · 김금래 · 김기현 · 김선동 · 김성동 · 김성식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옥이 · 김재윤 · 김정권 · 김정훈 · 김창수 · 김태원 · 나경원 · 남경필 · 박민식 · 박보환 · 박상은 · 박순자 · 박영아 · 박준선 · 박진 · 배은희 · 백성운 · 백재현 · 서상기 · 송광호 · 신건 · 신상진 · 신성범 · 신영수 · 신지호 · 심재철 · 안규백 · 안형환 · 안홍준 · 안효대 · 원희룡 · 원희목 · 유기준 · 유재중 · 윤석용 · 윤진식 · 이경재 · 이두아 · 이명규 · 이병석 · 이은재 · 이인기 · 이주영 · 이진복 · 이철우 · 이춘식 · 이한구 · 이한성 · 이해봉 · 임동규 · 임영호 · 장광근 · 장윤석 · 장제원 · 전여옥 · 전혜숙 · 정갑윤 · 정양석 · 정옥임 · 정의화 · 정장선 · 정진섭 · 정태근 · 조문환 · 조윤선 · 주성영 · 진성호 · 진영 · 차명진 · 최경희 · 최구식 · 최규성 · 최병국 · 한선교 · 허원제 · 허천 · 허태열 · 현경병 · 홍사덕 의원 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9. 6 강창일・김재균・이진복・유선호・

박은수·유승민·유기준·김춘진·장세환· 오제세·이해봉·조윤선·박선숙·노영민· 김재윤·최병국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8 강승규·김학용·성윤환·허원제· 신성범·김성태·최구식·한선교·유정현· 조진래·나성린·허천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1. 8. 9 김성동·김소남·이경재·김호연· 임동규·손숙미·허원제·정희수·이종혁· 이애주·신영수·한선교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0 나경원·김소남·이명규·유기준· 이정선·이한성·주성영·한선교·최경희· 강승규·배은희 의원 발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11. 2. 9 정장선·김진표·원혜영·박병석· 송민순·강봉균·박상천·신낙균·김성동· 박은수·최인기·홍사덕·장병완·최종원· 김성곤·김부겸·최문순·전혜숙·천정배· 오제세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 발의)

(2011. 6. 30 조윤선·이한성·유기준·이춘식· 정의화·강승규·허원제·이병석·조진형· 진성호·이철우·박선영·김장수·한기호· 황영철·권경석·김금래·권택기·김태원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5 전병헌·김재균·조배숙·유선호·김성곤·김재윤·장병완·이낙연·심대편· 강창일·김학재·최종원 의원 발의)

작은도서관 지원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1. 14 강창일·박기춘·우윤근·유기준· 이성헌·박은수·원희룡·양승조·유성엽· 임영호·김태원·김성곤·김우남·김성수· 홍재형·신상진·이시종·김종률·김동철· 송영길·김성순 의원 발의)

작은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9. 1. 9 김재윤·김우남·김재균·김창수·

박은수·송민순·안규백·안민석·김상희·양승조·이광재·이미경·이용섭·전병헌· 조배숙·천정배·최문순·최철국·홍희덕 의원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1. 3. 30 박선영·강명순·강용석·권선택· 권영세·김낙성·김영우·김옥이·김용구· 김유정·김창수·김춘진·박순자·박진·변웅전· 우윤근·유성엽·이명수·이용희·이진삼· 장광근·장세환·장윤석·황우여 의원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1. 7. 29 이정현·김정·권영진·손범규· 김장수·조배숙·이한성·문학진·홍사덕· 유성엽·이경재·김호연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09. 7. 1 허원제·배영식·성윤환·원희목· 유재중·이경재·이성헌·이종혁·장제원· 정병국·한선교·현기환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0. 3. 9 곽정숙·이정희·강기갑·김재균· 김영진·양승조·조승수·권영길·홍희덕· 홍영표·박은수·최문순·유원일·이정현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0. 2. 4 윤석용·강명순·정두언·권영진· 유성엽·구상찬·이한성·이두아·김희철· 김춘진·신상진·박은수·나경원·안민석· 이상민·고승덕·김재윤·이석현·유재중· 신성범·김정권·이계진·박준선·이정현· 김창수·조영택·안형환·홍사덕·조문환· 정희수·황영철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1. 12. 13 김재윤·유선호·전현희·조경태· 장병완·김재균·박은수·조영택·김성곤· 조배숙·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1. 3. 7 진성호·조진형·조윤선·허원제·

(2011. 3. 7 신성호·조신영·조윤선·허원제· 이병석·안형환·김성동·김창수·이경재· 이철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박상은·이애주·강명순·김금래· 최경희 · 김성수 · 신성범 · 이춘식 · 신상진 · 여상규 · 성윤환 · 김학용 · 김광림 · 나성린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1 강창일・김재균・주승용・장세환・ 백재현・김영진・조배숙・강기정・강성종・ 조경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9. 1 김춘진·전병헌·양승조·오제세· 유선호 • 안민석 • 김영진 • 이춘석 • 이찬열 • 강창일 · 권영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1. 8. 4 김을동·조경태·이사철·이명수· 조진래 · 노철래 · 류근찬 · 김태환 · 서상기 · 한기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 전혜숙·김동철·김재윤·유선호· 강창일 · 홍영표 · 이낙연 · 조배숙 · 문학진 · 장세환 · 정장선 · 전병헌 · 우제창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5 장병완 · 안규백 · 양승조 · 유선호 · 전병헌 · 전혜숙 · 김재균 · 강기정 · 이춘석 · 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2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 한 대안 제출)

이상 31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1. 11. 4 최인기·성윤환·윤영·김영진· 김우남・김학용・유성엽・김성곤・유선호・ 전현희 · 송훈석 · 강봉균 · 신건 · 김영록 · 권선택 의원 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 김효석·김재균·정범구·김우남· 최규성 · 조영택 · 문학진 · 김성곤 · 백원우 ·

전현희·김영록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4 김우남 · 김효석 · 이찬열 · 강기갑 · 김춘진 • 이용희 • 조경태 • 조정식 • 김동철 • 최인기·강석호 의원 발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0 김학용·안홍준·박준선·이사철· 정갑윤・성윤환・강길부・조진래・정해걸・ 김성수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박의)

(2011. 10. 20 김학용·안홍준·박준선·김정훈· 이사철 · 정갑윤 · 성윤환 · 강길부 · 조진래 · 정해걸 · 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3 송훈석·유선호·이경재·이윤석· 최경희 · 이사철 · 최연희 · 윤영 · 김세연 · 고흥길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

(2011. 7. 26 이범관·윤석용·정영희·황진하· 신성범·손범규·박민식·신영수·김용구· 김무성 · 권택기 · 강성천 · 이진복 · 변웅전 · 홍영표·홍희덕·조해진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1. 7. 12 김학용・김성수・강봉균・성윤환・ 신성범 · 강석호 · 윤석용 · 김용태 · 유기준 · 박준선 · 조전혁 · 원유철 · 강승규 · 여상규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10. 6. 10 이재선·변웅전·이상민·류근찬· 이진삼 · 이인제 · 이명수 · 김용구 · 강길부 · 임영호·조정식·김창수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1 김영록·김성곤·김춘진·박은수· 안규백 · 오제세 · 유원일 · 이춘석 · 전현희 · 조경태 · 주승용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11. 1. 27 유선호·김성곤·양승조·조영택· 조정식 · 이춘석 · 강창일 · 최규성 · 김춘진 · 장병완ㆍ이석현ㆍ김상희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8 정부 제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1. 9. 7 김영록·안규백·조경태·조경태· 박우순·신건·김춘진·전현희·주승용· 박은수·유선호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
(2011. 6. 23 정해결·정희수·한기호·김소남·신상진·김세연·이경재·정갑윤·박준선·김을동·유성엽·최경희·이한성·윤진식·김영우·김성수·고승덕·유정현·윤영·유기준·김호연·여상규·이화수·김태환·강석호·박보환·이사철·이철우·권영진·임영호·정수성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20 정부 제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0 유성엽·강기갑·김영진·김성수·이용경·박순자·오제세·김용구·신건·정병국 의원 발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6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김효석·김재균·전병헌·최규성·김동철·성윤환·오제세·김우남·이춘석·최재성·백재현 의원 발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2011. 6. 23 강석호·배영식·이한성·정희수· 주성영·김정권·이사철·김학송·이춘식· 정해걸·장윤석·여상규·이학재·김옥이· 이병석·김성수·김학용·신성범·윤영· 성윤환·조진래·황영철 의원 발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1. 11. 2 정부 제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9. 6 심재철·김효재·김소남·유정현· 김성동·박준선·이성헌·강명순·안형환· 이정현·김장수·정두언·정미경·이춘식· 정해걸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1 정해결·나성린·유기준·김세연· 김성수·유재중·신성범·김학용·성윤환· 윤영·정희수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1 정해걸·조배숙·이철우·김세연· 김성수·유재중·신성범·김학용·정영희· 이화수·윤영·정희수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1. 8. 12 강석호·성윤환·김용구·황영철· 주호영·정희수·정해걸·이한성·신성범· 이사철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5 여상규·김학송·조원진·조진래·배은희·김정·최인기·강석호·서상기· 신건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1 정해걸·조배숙·이철우·김세연· 김성수·유재중·신성범·김학용·정영희· 이화수·윤영·정희수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7 유선호·강창일·오제세·안규백· 조배숙·최규성·김재균·이석현·송민순· 조진래·신성범·김성수·황영철·정범구· 김영록·성윤환·송훈석·강석호·여상규· 정해걸·김성곤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11. 14 김우남·김효석·이찬열·강기갑· 김춘진·이용희·조경태·조정식·김동철· 최인기 의원 발의)

(이상 2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8건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11 정부 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9 김영환·최영희·장병완·신낙균· 조정식 · 정장선 · 강창일 · 김재균 · 주승용 · 변재일 · 김진표 의원 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1. 8. 26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 김창수・변웅전・신낙균・원혜영・유성엽・ 윤상일·이상민·이진삼·임영호·최재성 의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2011. 7. 14 송민순·김동철·김부겸·김세연· 김영진 · 김재윤 · 박선숙 · 신낙균 · 안규백 · 이성남 · 이용섭 · 이찬열 · 정범구 · 정장선 · 최재성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8. 19 김혜성·송훈석·정양석·김세연· 김을동 · 김정 · 노철래 · 김성수 · 박우순 · 김호연 · 김소남 · 배은희 · 김영환 의원 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4 김영환·이찬열·신학용·문희상· 최규식 · 유선호 · 허원제 · 정태근 · 이낙연 · 박영선 · 최인기 의원 발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8. 19 김혜성·김소남·김호연·노철래· 김성수·박우순·송훈석·김정·정양석· 김세연 · 김을동 · 배은희 · 김영환 의원 발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8. 19 김혜성·송훈석·정양석·김세연· 김을동・김정・ 노철래・김성수・박우순・ 김호연 · 김소남 · 배은희 · 김영환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8. 19 김혜성·송훈석·정양석·김세연· 김을동ㆍ김정ㆍ노철래ㆍ김성수ㆍ박우순ㆍ 김호연 · 김소남 · 배은희 · 김영환 의원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

(2011. 2. 10 최종원·전병헌·김재균·김부겸· 정장선 · 조영택 · 안민석 · 박우순 · 조경태 · 장병완 · 이종걸 · 양승조 · 장세환 · 김상희 ·

전혜숙·최문순 의원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최연희·최병국·허천·정영희· 한기호 · 송훈석 · 황영철 · 박우순 · 최경희 · 조경태·김정·권성동·정하균 의원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2011. 9. 21 정부 제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관한 청원

(2011. 10. 5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솔 봉로 449-7 염동열 외 3852인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1. 9. 9 권성동·김재경·이화수·김성회· 이상권 · 김태환 · 박진 · 김태호 · 이종혁 · 김정훈ㆍ이군현 의원 발의)

(이상 1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 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9. 6. 12 정미경·강석호·김성조·김영진· 김정훈 · 김충환 · 박종희 · 심재철 · 유성엽 · 유정현 · 이인기 · 이정선 · 이한성 · 이해봉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송영길·송민순·전혜숙·백원우· 박은수 · 이윤석 · 양승조 · 백재현 · 최영희 · 박영선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송훈석·김우남·정해걸·이계진· 이윤석・정갑윤・김낙성・임동규・정희수・ 이화수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3. 2 신상진·손숙미·김성수·오제세· 황우여 · 윤석용 · 권경석 · 유기준 · 백성운 · 김광림ㆍ김성회ㆍ강성천ㆍ배은희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11. 4. 4 박은수·주승용·백원우·장병완· 추미애 · 양승조 · 김상희 · 강창일 · 변재일 · 이미경·김재균·최영희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7 양승조·변재일·최영희·오제세·

조영택·박은수·이낙연·주승용·장병완· 윤석용·성윤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8 신상진·변웅전·이낙연·이춘식· 이한성·강명순·박상은·이명수·김을동· 김성회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1 박민식·원희룡·박준선·이한성· 김세연·정갑윤·현기환·전현희·유재중· 박대해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9. 6 심재철·김효재·김소남·유정현· 강명순·안형환·이정현·김장수·정두언· 정미경·이춘식·이성헌·박준선·정해결· 김성동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8 정부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 주승용·최철국·전현희·조영택· 박은수·노영민·김성곤·양승조·김영진· 김우남·김용구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1. 3. 8 주승용·박은수·조정식·박기춘· 최규성·백원우·장병완·추미애·양승조· 전현희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1 신상진·김정권·이한성·김성수· 유재중·원희목·김금래·손숙미·윤석용· 이춘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8 신상진·유성엽·이한성·양정례· 구본철·정양석·안홍준·안상수·이진삼· 박대해·박종희·정하균·황우여·나성린· 정영희·김우남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 밤의)

(2008. 11. 6 원희목·이달곤·전혜숙·정하균· 박은수·강명순·나성린·이인기·이경재· 안홍준·안상수·정영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 12. 15 정부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26 주승용·최철국·김동철·문학진·

조정식·김성곤·우윤근·이춘석·김재균· 강창일·김영진·김영록·박상돈·김창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2 양승조·강창일·김재균·강기정· 안민석·최영희·송민순·홍재형·김우남· 백원우·전혜숙·박은수·전현희·박선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 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 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 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2010. 9. 15 최영희·김우남·강기정·안민석· 양승조·김상희·전현희·신건·박은수· 주승용·최철국·백원우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11. 11 신상진·이애주·원희목·박은수· 윤석용·주승용·박순자·최영희·전현희· 이재오·곽정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회목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16 원희목·임동규·정하균·원희룡·황우여·곽정숙·이애주·손숙미·김춘진· 이정선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2 양승조·강창일·김재균·강기정· 안민석·최영희·송민순·홍재형·김우남· 백원우·전혜숙·박은수·전현희·박선숙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 발의)

(2011. 2. 11 박근혜·강길부·강명순·강석호· 강성천·강승규·고승덕·구상찬·권경석· 권영세·권영진·권택기·김정·김광림· 김동성·김선동·김성동·김성수·김성조· 김성태·김성희·김세연·김영선·김영우· 김옥이·김을동·김장수·김정권·김충환· 김태원·김태환·김학송·김학용·김혜성·

김호연 · 나경원 · 나성린 · 남경필 · 노철래 · 박대해 · 박민식 · 박보환 · 박상은 · 박순자 · 박영아 · 박종근 · 박준선 · 배영식 · 백성운 · 서병수 · 서상기 · 성윤환 · 손범규 · 손숙미 · 송광호 · 송영선 · 신상진 · 안홍준 · 원희목 · 유기준 · 유승민 · 유일호 · 유재중 · 유정복 · 유정현 · 윤영 · 윤상현 · 윤석용 · 이경재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상권 · 이성헌 · 이애주 · 이인기 · 이정선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혁 · 이주영 · 이진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해봉 · 이혜훈 · 이화수 · 장윤석 · 장제원 · 전재희 · 정갑윤 · 정미경 · 정수성 · 정영희 · 정하균 · 정해걸 · 정희수 · 조문환・조원진・조전혁・조해진・주광덕・ 주성영 · 주호영 · 진영 · 진성호 · 최경환 · 최경희 · 최구식 · 최병국 · 최연희 · 한기호 · 한선교 · 허원제 · 허태열 · 현기환 · 홍사덕 · 홍일표·황영철·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3 주승용·최영희·최인기·우윤근· 백원우·최규성·조영택·양승조·박은수·

김춘진·김성곤·김영진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7. 15 전현희·백원우·양승조·정장선· 박지원·유선호·김효석·이종걸·최규식· 정범구·강기정·김영진·송훈석·이춘석· 주승용·박기춘·최영희·우윤근·신건· 김상희·박우순·김희철·홍영표·노영민· 김진표·박병석·추미애·조정식·박은수· 변재일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4 양승조·최영희·박우순·추미애· 이종걸·박은수·전현희·이춘석·주승용· 장세환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7 유재중·안홍준·신성범·유기준· 박대해·김세연·허원제·이군현·이애주· 이명규·유일호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5 이재선 · 주승용 · 이명수 · 이용희 ·

이애주·김성곤·윤석용·임영호·이진삼· 이춘식·신상진·김창수·이인제·류근찬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발의) (2011. 10. 20 박은수 의원 외 86인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회 의원 대표 발의)

(2011. 11. 7 진수희·권영진·김장수·강승규· 권택기 · 김재경 · 김정훈 · 이한구 · 서병수 · 이경재・원희목・李玲愛・주광덕・정병국・ 김용태 · 이윤성 · 안형환 · 장윤석 · 윤영 · 홍사덕 · 심재철 · 구상찬 · 장제원 · 김성수 · 김성동 · 박대해 · 권성동 · 조진래 · 임동규 · 김동성・정태근・김영우・이정선・조윤선・ 이병석 · 이철우 · 나성린 · 이두아 · 이재오 · 박상은 · 차명진 · 신지호 · 서상기 · 조진형 · 김학송 · 박순자 · 박민식 · 박준선 · 이화수 · 이춘식 · 김성회 · 김태원 · 허원제 · 전여옥 · 이군현 · 이한성 · 유정현 · 진성호 · 정옥임 · 손범규 · 최경희 · 김소남 · 임해규 · 김성조 · 이종구 · 이영애 · 강명순 · 김무성 · 정몽준 · 정의화 · 김기현 · 손숙미 · 이애주 · 유재중 · 조전혁 · 원희룡 · 김정권 · 신성범 · 신상진 · 유승민 · 황진하 · 김선동 · 신영수 · 이종혁 · 김태호 · 유기준 · 김호연 · 전재희 · 안효대 · 권선택 · 안경률 · 윤진식 · 이학재 · 박영아 · 홍정욱 • 배은희 • 최구식 • 김충환 • 김부겸 • 윤상현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31 곽정숙·강기갑·이정희·홍희덕· 권영길·金先東·유원일·조승수·유성엽· 이미경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26 원희목·신상진·손숙미·권택기· 강명순·유재중·서상기·윤석용·김정훈· 김옥이·임동규·박은수·김장수·심재철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 7 정부 제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 신상진·황우여·박순자·이경재· 손숙미·최경희·임동규·윤석용·윤진식· 권영세·임영호·이애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4 이주영·강승규·권영진·김무성· 김선동·김성태·김소남·김재경·김정권· 서병수·신상진·신영수·신지호·원유철· 원희목·유승민·유정복·이정선·이진복· 이한성·이화수·임해규·정갑윤·정영희· 정의화·조진래·주성영·주호영·허원제· 홍일표·홍정욱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 발의)

(2011. 8. 8 김성식·권영진·조진래·이한성· 현기환·김세연·신성범·권택기·송훈석· 손숙미·원희목·안홍준·정진섭·김태원· 임해규·손범규·정태근·원희룡·정두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10. 8. 25 이낙연·전혜숙·유성엽·백재현· 송민순·주승용·김낙성·조정식·박민식· 강창일·허원제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0. 5. 19 김영록·강기정·김우남·김재균·김춘진·김효석·서갑원·신건·이춘석· 전혜숙·조경태·조배숙·주승용·최인기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 발의)

(2010. 8. 9 정해걸·김우남·정양석·안규백· 김세연·임영호·류근찬·정희수·최인기· 윤석용·신성범·권영진·최구식·최규성· 성윤환·안형환·황영철·이사철·김영우· 김태환·김성수·김을동·유재중·이철우· 이재선·허태열·김성순·김희철·강석호· 강기갑·여상규·이경재·김정권·노철래· 원혜영·유정현·신학용·김용구·이해봉· 김성동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4 신상진·이경재·권영진·황영철· 김정권·이한성·배영식·손범규·김성수· 유재중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2010. 4. 6 손숙미·조진래·김소남·유재중· 서상기·원희목·김을동·김선동·김효재· 임두성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3. 31 신상진·황우여·박순자·김금래· 유재중·이애주·최경희·김성태·김성수· 이춘식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8. 11 신상진·이한성·신지호·박우순· 노철래·조진형·김선동·김기현·윤석용· 유재중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 발의)

(2011. 9. 21 노철래·정영희·김정·김혜성·김정권·송영선·김을동·유정현·주승용·윤상일·박대해·변웅전·백원우·정하균·정갑윤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 양승조·이낙연·박우순·박은수· 전현희·박지원·박영선·최영희·오제세· 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4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7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빛공해방지법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09. 9. 9 박영아·강성천·강창일·권영세· 김세연·김춘진·김효재·박대해·박종희· 박준선·서상기·송민순·안규백·여상규· 유기준·이성헌·이용경·이인기·이한성· 임해규·정두언·정의화·조문환·조승수· 조전혁·최재성·허원제 의원 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11. 5. 19 박준선·김금래·김세연·김학송· 김호연·손범규·송영선·윤석용·이화수· 정해걸·조원진 의원 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11. 5. 6 정부 제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1. 10. 7 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 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 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헌·이화수· 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 황영철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1. 10. 7 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대·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헌·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7 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 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 이범관·이범래·이성헌·이화수·정갑윤· 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9 강성천·이정선·유정현·박준선· 김옥이·김용구·정미경·김소남·손범규· 신영수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1 손범규·김태원·유기준·이인기·양정례·정영희·유성엽·홍일표·윤상현·박보환 의원 발의)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 발의)

(2009. 9. 9 박영아·강성천·강창일·권영세· 김세연·김춘진·김효재·박대해·박종희· 박준선·서상기·송민순·안규백·여상규· 유기준·이성헌·이용경·이인기·이한성· 임해규·정두언·정의화·조문환·조승수· 조전혁·최재성·허원제 의원 발의)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

(2010. 6. 7 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

김영환·우윤근·이춘석·박주선·김창수· 김부겸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30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09. 6. 29 김상희·강창일·원혜영·노영민· 김춘진·양승조·신학용·홍희덕·박선숙· 유원일·김재윤·김동철·김종률·안민석· 박은수·조승수·곽정숙·최문순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

(2009. 10. 28 최영희·김성순·박영선·박은수· 백원우·송민순·송영길·양승조·이미경· 장세환·전혐희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0. 11. 29 정부 제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1. 3. 10 김태원·김정권·주광덕·신상진· 손범규·임해규·황우여·권경석·김소남· 이두아·이종혁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09. 7. 6 이성헌·김정권·임두성·송영선· 이한성·이종혁·유성엽·허원제·이인기· 한선교·박상돈·황우여·신상진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09. 9. 18 이성헌·김정권·신학용·이인기·임두성·송영선·이한성·김성태·손범규·한선교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4 이성헌·김정권·유성엽·이한성· 이종혁·이해봉·김성태·임두성·김효재· 김우남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 정부 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1 박준선·강성천·김세연·박대해· 송영선·이화수·정갑윤·조원진·허천· 황영철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9 정부 제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

(2008. 11. 11 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1. 10. 7 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 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 이범관·이범래·이성헌·이화수·정갑윤· 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 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 12 여상규·신성범·정갑윤·박상돈· 김창수·심대평·안형환·조문환·박희태· 양승조·원희룡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0. 3. 4 홍영표·정장선·김진애·최문순·이강래·김춘진·우제창·조정식·이낙연·김동철·김재균·양승조·안규백·이찬열·김상희·전혜숙·신학용·이성남·박선숙·최영희·최규성·백재현·박은수·원혜영 의원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최규식·강창일·박영선·이명수· 원혜영·신낙균·유선호·강봉균·이화수· 정동영·서종표·문희상·최종원·박은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9 정부 제출)

(이상 21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 한 대안 제출)

이상 28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

(2010. 5. 13 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 김영환·우윤근·이춘석·박주선·김창수· 김부겸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30 정부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3 차명진·이명규·이화수·정해결·유일호·성윤환·권경석·김성조·임동규·박대해·김태원·조전혁·안효대·김용태·박순자·서상기·박보환·원희목·최병국·손숙미·이종혁·박준선·홍일표·김장수·나성린·이혜훈·전여옥·이은재·이정선·황영철·백재현·백원우·박기춘·강기정·최규성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5. 6 정부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

(2011. 7. 28 박희태·정의화·최구식·배은희· 신성범·안홍준·변웅전·김을동·여상규· 김태호·조진형·황진하·강길부·송영선· 김재경·송광호·이경재·고흥길·주호영· 안상수·이한성·이학재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1. 5. 31 김기현·이경재·이한성·공성진· 이명수·백성운·송광호·장광근·정진섭· 장윤석·김광림 의원 발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8. 30 권영진·박민식·황영철·김세연· 정갑윤·윤석용·박보환·조전혁·서상기· 신성범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10. 3. 30 장광근·윤영·강창일·이한성· 신영수·권영세·고승덕·허천·김소남· 이인기 의원 발의)

해양경비법안

(2010. 11. 23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1. 3. 29 김기현·이한성·유기준·황우여· 강길부·안효대·김세연·박순자·허원제· 김충환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09. 6. 8 이학재·이한성·한선교·이두아· 신성범ㆍ이성헌ㆍ유정복ㆍ신학용ㆍ안홍준ㆍ 신상진 · 신영수 · 정영희 · 홍정욱 · 김성태 · 유성엽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0. 8. 6 장제원·강용석·안형환·윤영· 김금래・송훈석・홍정욱・조진래・안홍준・ 이한성·김정훈·임동규·김효재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워 대표발의)

(2010. 7. 26 백재현·안민석·백원우·강성종· 문학진 · 강기정 · 조경태 · 최규성 · 박선숙 · 박기춘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워 대표발의)

(2010. 7. 15 권선택·김창수·박대해·이진삼· 이재선・이명수・김낙성・김재윤・류근찬・ 임영호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 김재윤·강기갑·김우남·김진애· 유선호 · 유원일 · 이용섭 · 이인기 · 조정식 · 최규성·최문순·황우여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 정부 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최구식·신성범·김금래·권영진· 조진래 · 정진섭 · 홍사덕 · 허원제 · 한선교 · 서병수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장광근ㆍ최영희ㆍ이재선ㆍ이애주ㆍ 윤석용 · 이낙연 · 이춘식 · 김세연 · 황영철 · 박준선 · 추미애 · 김금래 · 신성범 · 김성순 · 이인제 · 이해봉 · 정희수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워 대표발의)

(2011. 9. 14 유선호·문학진·강기갑·김재균· 최규식 · 김학재 · 조영택 · 박영선 · 김춘진 · 강창일 · 김영진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10 정부 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2010. 3. 16 전여옥·최구식·진수희·정진석· 정미경 · 정양석 · 진영 · 권택기 · 신낙균 · 이정선 · 손숙미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7. 1 이한성・정희수・이성헌・신지호・ 이해봉 · 김학송 · 황우여 · 황영철 · 조윤선 · 김기현·송영선·정병국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4 정부 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오제세·김효석·김춘진·김용구· 최규성・이찬열・조영택・조배숙・손범규・ 김재균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 임동규・송영선・정동영・이해봉・ 심재철 · 임두성 · 원희목 · 이은재 · 김태환 · 허천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7 백성운·이인제·주광덕·김기현· 안홍준 · 최구식 · 권선택 · 심재철 · 장윤석 · 신상진 · 김효재 · 현기환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1. 3. 17 이찬열·송민순·이윤석·유선호· 김재균 · 백재현 · 김진표 · 강창일 · 김충조 · 오제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9. 9. 2 이용섭・박은수・조승수・송민순・ 유성엽 · 송영길 · 강창일 · 신낙균 · 김재윤 · 김동철 · 박주선 · 김재균 · 곽정숙 · 문학진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0. 3. 26 조정식·문학진·강창일·원혜영· 우제창・김성곤・김진표・전혜숙・박기춘・ 김부겸·김성순·조배숙·김진애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발의)

(2011. 3. 11 최규성 의원 외 84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2011. 4. 21 고흥길·강성천·김기현·김소남· 김창수 · 김태원 · 박보환 · 배은희 · 신영수 · 심재철 · 안상수 · 원유철 · 원희목 · 유일호 · 유정현 · 이두아 · 이병석 · 신상진 · 이종구 · 이한성・조원진・진성호・이춘식・황우여・ 차명진·백성운·홍사덕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발의)

(2011. 7. 14 정부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2011. 7. 21 백성운・정수성・조진래・임동규・ 김정권・강용석・최구식・정진섭・박준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11. 4. 4 정진섭·이화수·김효재·나성린· 심재철·이종구·장광근·박보환·노철래· 배은희·박상은·백성운 의원 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1. 4. 20 박기춘·이한성·강봉균·조영택· 주광덕·이윤석·최규성·이찬열·오제세· 김성곤 의원 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8 이진복·윤상현·김용태·이성헌· 이사철·박순자·박준선·최구식·황영철· 진수희·현기환·김호연·김장수·권경석· 권택기·성윤환·이명규·권영진·조문환· 이정현·정해걸·이병석·김정훈·이화수· 박영아·나성린·여상규·김광림·김영선· 진성호·유기준·김태원·박대해·주호영· 임동규·김세연·정하균·노철래·김혜성· 김을동·조전혁·배영식·김성태·권영세· 김대환·이학재·이한성·이은재·이혜훈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2008. 9. 24 윤두환·이혜훈·이한성·구본철· 안상수·노철래·임두성·김성조·정희수· 안효대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 발의)

(2009. 6. 24 김낙성·류근찬·최인기·임영호· 우윤근·김춘진·심대평·김창수·김용구· 최철국·이명수·이인제·송훈석·이재선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6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5 정부 제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6 정부 제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8 박상은・송영선・이한성・김성곤・이경재・정진섭・이재선・이춘식・신상진・김성수・신성범・황영철・조윤선・이애주・김금래・강명순・최병국・강길부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0 홍일표·이한성·이찬열·차명진· 장윤석·김희철·정희수·최규성·유선호· 신영수·김기현·이학재·윤상현·박상은· 이경재·신성범·이윤성·조전혁·이상권· 조진형·신학용 의원 발의)

(이상 3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5건 국토해양위원장 보고

자녀돌봄지원법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7 이정선·강성천·고승덕·김소남· 박준선·송영선·유정현·원희목·이인기· 정미경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0. 4. 9 김세연·유승민·유성엽·권영진·유기준·이해봉·정갑윤·이한성·홍정욱·임동규·이두아·김성태·박선영·장제원·황우여·강용석·송민순·이계진·이인기·안형환·정해걸·박보환·최문순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8. 27 임동규·조문환·김정권·유기준· 정해걸·우제창·유성엽·정옥임·김효재· 김태원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0. 9. 10 박선영·권선택·김금래·김세연·김영우·김옥이·김정·김충환·김태원·류근찬·변웅전·유성엽·이종혁·임영호·전재희·황진하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7. 22 오제세·김재균·임영호·백재현· 조경태·김세연·김춘진·최철국·이춘석· 변웅전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6. 1 김춘진·오제세·조영택·이성헌· 이한성·유성엽·김영록·김영진·양승조· 이경재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0. 8. 6 김을동·김세연·이명수·유승 민·고승덕·박대해·이용경·신영수·이철 우·김효재·홍사덕·한선교·송영선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0. 8. 23 최병국·최연희·이주영·노철래· 현경병·박민식·손숙미·강길부·정희수· 이진복·정갑윤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 김영선·안효대·고승덕·김태원·김충환·황우여·차명진·이범관·신영수· 손범규·이해봉·최영희·김옥이·조배숙· 김혜성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헌· 박선영·노철래·윤상일·송훈석·김혜성· 이찬열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 김재윤·강기갑·김우남·김진애· 유선호·유원일·이용섭·이인기·조정식· 최규성·최문순·홍영표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한선교·손범규·이인기·유성엽· 이애주·이한성·안홍준·김태원·안형환· 정갑윤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1. 19 신상진·이명수·오제세·안홍준· 김효재·이성헌·이한성·임해규·김성태· 정범구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1. 3. 23 유재중·이춘식·안홍준·현기환· 김금래·원희목·이정선·김소남·신성범· 정옥임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1 정옥임·김호연·이한성·유기준· 김충환·유성엽·이춘식·이영애·신상진· 권성동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1. 5. 6 김영록·강기정·김우남·김재균· 김춘진·류근찬·박우순·박은수·신건· 오제세·유선호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6. 24 김혜성·윤석용·윤진식·이한성· 권영진·박우순·이진삼·김정·유성엽· 노철래·조배숙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

(2011. 5. 12 강봉균·이낙연·성윤환·김우남· 김효석·김재균·오제세·전병헌·유성엽· 김성곤·백재현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2. 9 김우남·주승용·유성엽·박은수· 최재성·신건·이종걸·장병완·조정식· 조경태·강창일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26 정부 제출)

(이상 1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9. 16 이한성·김학송·윤석용·김소남· 유승민·이진복·김장수·손범규·김무성· 한기호·김성회·이인기·김옥이·김동성· 원유철·황진하·정하균·정수성·노철래· 장윤석·성윤환·정해결·강석호·김광림· 이철우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

(2011. 8. 10 최종원・손학규・김진표・김우남・

강기정·안민석·양승조·최영희·변재일· 김재윤·이용섭·장병완·장세환·김상희· 이종걸·조영택·천정배·정장선·강창일· 백재현·김학재·박주선·송훈석·주승용· 유선호·이석현·김재균·이성남·이춘석· 박은수·박우순·신건·안규백·김부겸· 박지원·전현희·전혜숙·전병헌 의원 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특별법안(유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1. 7. 26 윤석용·이윤성·김태원·김선동·김정권·나성린·신성범·김세연·유정현·김무성·윤영·유재중·강승규·권영진·이한성·윤상현·김성식·권택기·진성호·서병수·강명순·홍사덕·이종혁·유성엽·정태근 의원 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1. 7. 7 권성동·박준선·백성운·유정복· 차명진·나성린·신상진·조진래·정진섭· 김정권·유정현·김영우·안형환·배은희· 원희목·김성태·김성동·윤상현·신지호· 신성범·강승규·이병석·유기준·강석호· 이한성·임동규·이군현·이윤성·장제원· 김재경·안경률·허천·성윤환·한기호· 이재오·정의화 의원 발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9. 9. 3 이시종·김진표·임영호·유성엽· 강창일·김성곤·노영민·홍재형·변재일· 송광호·이용희 의원 발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2010. 3. 19 이경재·김재균·김영진·강기정·조영택·이용섭·이명규·배영식·홍사덕· 서상기·김효재·김금래·이해봉·이한구· 윤상현·최구식·성윤환·홍일표·안형환· 진성호·송훈석·허원제·주성영·이학재· 조전혁·김을동 의원 발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 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3 신학용·홍영표·백재현·우제창· 김충조·유선호·최재성·김영환·강창일· 손학규 의원 발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1. 9. 21 정부 제출)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1 서상기·정두언·이종혁·원희목· 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 임해규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0 김을동·홍사덕·송영선·정의화· 김우남·김태원·이명수·전병헌·안규백· 박선영·유기준·이철우·이시종·유성엽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0. 2. 25 김을동·박상은·이명수·이종혁· 권성동·정의화·노철래·임영호·김재윤· 송영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 12. 31 정부 제출) 12월 27일 제출자 철회 요구

12 전 21 한 세 한 시 결위 3

○추천의뢰서 제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1. 12. 27 대통령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디지털 전환 시 KBS 을지국 TV뉴스 축소관련 질문서

(2011. 12. 26 박우순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소방감리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1. 12. 26 정부 제출)

지방으로 기업이전시 지방이전보조금 축소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1. 12.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2년도 예산서(뉴스통신진흥회, 연합통신)

(2011. 12. 28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